

< 통일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 연구

2013. 12.

연구책임자: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요 약

【연구책임자】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 중 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핵보유의 영구화와 핵억제담론의 심리

- 북한핵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12월 조선과학원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가 창설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핵개발→비핵화→핵보유의 단계를 거쳐왔음
 - －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김일성-김정일 헌법”을 만들고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핵보유국”을 명문화 했음
 - － 북한은“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차원에서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했음
 - － 북한은“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와“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2013년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을 공표함
 - －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대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국내법으로 핵보유를“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함
-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핵억제력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핵억제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인정, 결의를 필요로 함
 - － 첫째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핵운반체 실험,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이 필요하리라 예상됨
 - － 둘째 핵억제력은 억제의 대상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함
 - － 셋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는 낮

은 수준의 분쟁에서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핵억제력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북한처럼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는, 적이 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억제력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대량의 핵무기 보유 및 군비경쟁을 필요 없게 만들고 위기와 대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북한은 저비용 고효율의 핵억제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을 경제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음
-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이 사례로 보일 수 있음

■ 북한핵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시각

○ 미국의 시각

- 2010년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선택했으며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있음
-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확산만 하지 않는다면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로 보임
-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남겨둔 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비핵화와 비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시각

- 중국은 미국에 대해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핵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임
-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신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자 함
- 중국은 북한을 결박하고 북한의 친미화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인 6자회담을 필요로 함
- 미국의 동북아에서 재균형정책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의 고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일 수밖에 없음

○ 러시아의 시각

- 러시아는 국가체제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변환경 창출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함
-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과 함께 북한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핵문제에 관한 한 러시아도 강대국 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지만, 그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며 충격과 압박이 아닌 정치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추구함
-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 저하를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이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함

○ 일본의 시각

- 일본은 북일관계 정상화를 중요한 외교숙제로 여기고 있으나 북핵이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봉착해 있음

- 북핵을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심리적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협을 활용하고 있음
- 포괄적으로 일본은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있어 역할은 한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과의 일치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북핵문제가 재부상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위축되고 있음
 - 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으로 전개, 반면에 남북한 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남북관계라는 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본적으로 불가능
 - 박근혜 정부의 북핵 역할은 반드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채널을 견고하게 확보해야만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서 우리 입장 관철 가능
-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 모멘텀 조성
 -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할 필요
 - 이미 국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

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 북핵 이슈가 미중간 복합적 이해관계에서 다뤄지면서 한국의 존재감 및 역할 왜소
- 한미공조 활용한 대미 설득과 남북관계 이용한 대북 설득, 그리고 한중협력 통한 대중 설득이 선순환으로 결합해야 북핵문제 해결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가시화
-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내건 양대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체결 및 불가침선언 등은 상호 협력과 신뢰가 구축된 뒤에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북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1차적 관건

■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 핵 포기 사례 비교

국가명	개발시기	개발 수준	개발 의도	포기시기	포기 사유
리비아	70-03	농축우라늄 16kg	이스라엘 및 미국의 공격방어	2003년	미국 압박(PSI) 및 카다피 암살 공격
우크라이나	냉전 시기	ICBM 176기, 핵탄두1,240개	미-소 냉전	1994년	체제전환 및 강대국의 안전보장
남아공	70-93	핵폭탄 6개	소련 지원 앙골라의 공격 방어	1991년	체제전환 및 외부 위협 소멸(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 인도와 파키스탄 핵개발 사례 비교

구 분	인 도	파키스탄
핵실험 시기	•1차(74.5.18) •2차(98.5.11 3회, 98.5.13 2회)	• 98.5.28 5회, 98.5.30 2회
개발 배경	•주변국 안보위협 •국제적 위상제고	•주변국 안보위협 •경제적 문제 해결
개발 과정	•이 소련 및 중국지원 •2차례의 핵실험	•미국 및 캐나다 지원 •자체 핵능력 개발
미국과의 관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적극적 제재 자체	•미국의 필요성과 이해 관계 고려 양면적 관계 형성
NPT/IAEA 가입여부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不可)
특 징	•선제 핵타격 지양 •‘억지’를 강조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재래식 전력 보완 •‘공세적 방어전략’ 적용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차단 및 대응 노력으로 13.11.24,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	P+1(5개 상임이사국+독일)
•6개월간 핵프로그램 중단 축소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추가 건립하지 않음 •5% 이상 농축우라늄 생산 중단 (5% 미만은 생산 가능) •20% 농축우라늄 회석 •중수로 건설 중단 •IAEA 등 국제기구 이란 핵시설 상시 사찰	•이에 대한 대가로 서방 70억 달러 가량 대이란 제재 해제 (석유관련 해외자산 42억달러 동결 해제, 자동차·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재 중단, 금·귀금속 거래 제재 중단) •이란 약속파기 경우 즉시 제재 복원



■ 가칭“한반도 그랜드 플랜”구상

- 결론적으로 6자회담 등 기존 논의, 북한의 핵보유 포기 가능성, 미국 식 협상체계의 한계, 평화체제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인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함.
 -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내용, 그랜드바겐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그랜드 플랜’을 수립·관련국과 협의 개시

□ 그랜드 플랜의 주요 내용

- 비핵화가 미북간 신뢰의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 신뢰 문제, 동북아 평화 협력이 국제사회간 신뢰 조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뢰’를 매개로 ‘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을 한 채널로 융합
 - △기존 비핵화 채널의 모든 협의 요소와 쟁점 등을 도출하고 △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요소, △동북아 평화협력으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모두 배열하여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들을 구성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는 비핵-평화지대 설정,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목표로 전개
 - * 통일문제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화체제의 최종목표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설정

< 그랜드플랜의 주요 골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간 신뢰)	비핵화 구상 (북미간 신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국제사회간 신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일괄타결 및 단계적 이행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다국간 협력안보체
○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 회담 추진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정치군사 신뢰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 '비전 코리아' 추진	○ 한미/한중/한미중 대화 ○ 6자회담 재개 ○ 6자 정상선언 추진 ○ 평화체제 협상 개시 ○ 국제공조체제 유지	○ 역내 연성이슈 협력 ○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 유라시아 경제협력 ○ 서울 프로세스 추진

을 추동하는 별도의 이행기구 마련

o 일괄타결을 위한 주요 쟁점

- 비핵화 트랙(기존 핵무기, 핵물질,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제공 문제, 신고 및 검증, 사찰 방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등)
-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트랙(주한미군 철수, 군축 등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가동 문제, 평화협정 체결 시기 및 내용 등)
- 동북아평화협력 트랙(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다자안보대화, 서울 프로세스 추진 방안 등)

o 단계적 이행 조치

- 6자간 대타협(그랜드 플랜 실행 합의) 이후 북한 비핵화 조치를 3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이행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3단계 이행방안 >

1단계	- 북한의 NPT 복귀, 비핵화공동성명·9.19공동성명 준수 표명, 핵 시설 가동 및 핵개발 중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불가침 및 종전선언
2단계	- 북한 핵프로그램(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신고 및 검증가능한 폐기 - 경제지원 패키지 가동(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 - 대북제재 완화·중단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평화체제 협상 개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동북아 경제협력사업 추진, 다자안보 대화 개시
3단계	- 북핵폐기 달성 - 평화협정 체결 - 남북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서울 프로세스 추진)

□ 그랜드 플랜의 이행 방식 :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

o 포괄적 접근에 따라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 평화협력의 협의 요소 들을 일괄 타결

i)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문제의 동시적 교환

- 북한 비핵화 결단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
- 북한의 핵동결-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간 '동시행동' 로드맵 마련

ii)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맞춰 대북 경제지원 추진
- 남북경제협력, 유라시아 3각 협력 등 북방경제플랜 가동
- 안보리 제재 조치 해제, 다국적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플랜 가동 등
- * 가역 조치와 불가역 조치와의 관계성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미 이행 강제수단 확보(안보리 제재조치의 단계적 이행)

iii)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적 접근

- 비핵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트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행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 수반
- 9.19 공동성명 working group 사례를 참고하여 세가지 트랙

□ 국제사회와의 협의 방향

- 과거 비핵화 협상방안들이 동맹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서 공감대와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
 - 포괄적인 해법은 좋으나 그랜드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비핵화 및 한반도 장래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마련한 이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진전략(comprehensive strategy)을 중국 등 핵심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필요

- 따라서 그랜드플랜이 실제 협상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국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
 - 그랜드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조와 중국의 협조,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 여타국의 지지 등 확실히 담보되어야 함.

i) 한미간 협의

- 한미간 비핵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방안, 평화체제 구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확인
-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따른 대중관계의 비전, 핵없는 사회 건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과 대북 체제안전보장에 따른 북한의 장래와 연관지어 미국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인 바, 오바마 행정부내 선택포기론, 전략적 인내론, 대북 불신과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ii) 한중간 협의

-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신뢰구축 및 관계정상화가 긴요하

다는 입장인 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가능성

- 다만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한편, 중국은 동 교환을 위한 세부이슈 확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소극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중 3자간 협의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iii) 5자협의 진행

- 북한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한중간 그랜드 플랜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러시아 등 5자 당사국간 의견일치 확보
- 그랜드 플랜의 수용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5자협의 활성화 필요(참여국간 철저히 조율된 조치만이 지난 북핵협상의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임)

iv) 대북협의 진행 및 6자회담 개최

-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대북협의 진행 필요
- 남북접촉, 북미접촉, 남북미중 4자 접촉 등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및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약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
-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불신 및 핵포기 의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 바, 남북한간, 북중간 대화설득 노력이 긴요
 - *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 정상차원의 외교노력이 전개될 필요
- 이러한 프로세스는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6자간 9.19 공동성명을 갱

신하고 새로운 비핵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간 이행조치에 대한 대합의(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토대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알리는 ‘6개국 정상선언’ 추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협 : 6개국 정상선언(안)에 담길 내용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천명, 미국의 항구적 대북 안전보장 천명
-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대북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동시이행 원칙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비전
- 6자회담 정상선언을 이행할 기구 구성 등

□ 남북관계 관련 협의 방향

<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 >

- o 비핵화-안전보장 대타협이후 대부분의 남북관계 조치들이 비핵화 트랙에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임.
- 우선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전개
 - *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은 MB 정부때의 ‘비핵-개방-3000’구상을 활용할 필요
- 5.24 조치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penalty 성격이 많은 만큼 대규모 경제협력 및 교역을 위해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협의가 개시되어야 함.
- 남북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도로,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등을 추진

<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대화체 복원 >

- o 비핵화에 대한 6자간 대타협 이전과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최소한 두차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랜드 플랜 제시 및 비핵화 대타협을 위한 남북차원의 독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중간 협의에 병행하여 남북정상회담 타진
 - 비핵화 대타협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남북간 협의채널 복원
- o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원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통제, 군축 문제를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비핵화-상응조치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구성

- o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검증 및 반대급부 이행을 계획-이행-감독할 추진기구 구성
 - 특히 북한 핵폐기 과정의 검증, 경제적 반대급부 이행, 남북관계-북미-북일관계 등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로드맵 이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 등을 포괄하는 기구 필요
 - 가칭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로서 국제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분과기구(위원회, 사무국 등)를 두어 남북을 포함, 6자회담 모든 참가국이 참여
 - 6자회담은 6자간 조치들을 결정하고 최종 추진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

※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가칭) 역할

- 그랜드 플랜 및 6자 정상선언 이행
- 기타 6자회담 결정사항 입안 및 이행
- 분과 기구(위원회)
 - 비핵화 분과 : 북한 핵관련 조치 및 상응조치 감독
 - 평화체제 이행 분과 :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 북한 재건프로그램 이행
 -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 서울 프로세스 입안 및 이행

목 차

I. 북한핵의 역사적 전개 / 1

1. 핵개발에서 핵보유로 / 1
2. 비핵화에서 핵보유의“부득불 장기화”로 / 8
3. 핵보유의“영구화”로 / 14

II. 북한핵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시각 / 19

1. 미국의 시각: 비확산인가 비핵화인가 / 19
2. 중국의 시각: 신형대국관계와 6자회담 / 23
3. 러시아의 시각: 신동방정책과 6자회담 / 26
4. 일본의 시각: 북한의 위협과 관계정상화의 이중주 / 28

III.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31

1. 동력 회복을 요하는 북핵문제 / 31
2. 북핵문제의 쟁점과 새로운 접근 / 33
3. 6자회담의 의제 논란과 관련국의 입장 / 35
4.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성 / 39

IV.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 46

1. 핵 포기 사례 분석 / 46
 - 1) 리비아 : 제재와 협상에 의한 핵폐기 / 46
 - 2) 남아공화국 / 49
: 인종차별 정권 종식과 외부위협 소멸로 자발적 핵폐기
 - 3)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 53
: 미·소 START와 미국의‘CTR구상’

2. 핵개발 차단 실패 사례 평가 / 57

- 1) 인도의 핵개발 성공과 미·인도 ‘핵협력 협정’ / 58
- 2) 파키스탄의 핵개발 성공과 미국의 양면적 대응 / 61
- 3) 이스라엘의 핵보유 성공과 미국의 묵인 / 63

3. 핵개발 차단 진행 사례 현황 / 65

- 1) 이란의 핵개발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 65

V.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존합의 및 이행 평가 / 68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68
2. 제네바합의 / 72
3. 9.19 공동성명 / 75

VI. 가칭“한반도 그랜드 플랜”구상 / 85

1. 목표 / 85
2. 구도 / 87
3. 이행방식과 기구 / 91
4. 참여국과 협의방향 / 95

I. 북한핵의 역사적 전개

1. 핵개발에서 핵보유로

(1) 핵개발의 기원

- 한국전쟁 기간 동안인 1952년 12월 북한은 조선과학원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를 창설했음
 - 1950년 11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음
 - 1955년 3월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1955년 4월 북한은 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 설치를 결정했음¹⁾
- 1956년 2월 북한은 소련과 핵연구 협력협정을 체결했음
 -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로동신문」을 살펴보면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핵실험에 반대하는 기사(예를 들어, 1956년 3월 28일, “일본 각계에서 미영의 핵무기 시험을 반대”, 4월 1일 “마셜 군도 주민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핵무기 시험을 반대”)들을 다수 게재하면서, 동시에 소련의 핵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었음
 - 「로동신문」 1956년 7월 15일자에는 “연합 원자핵 연구소 설치에 관한 협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음
 - 모스크바 근처 두브나(Dubna)에 있던 이 연구소에 파견된 북한의

과학자들이 북한 핵기술 발전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1959년 9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음
 - 당시 북소관계가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대중경제를 위해 북한과 협력을 선택한 것임
 - 그럼에도 원자력 협력은 지연되다, 1962년 정도부터 재개되었고, 영변이 연구소 건설을 위한 장소로 결정되었고 이후 소련으로부터 2MW급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도입하게 됨
 - 당시 소련이 북한에 핵기술을 지원한 것은, 중소분쟁의 와중에 북한을 자신의 편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963년 8월 4일 「로동신문」: 사실로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해서 핵무기를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라는 글이 등장함
 - 이 글은, 1963년 8월 2일 「로동신문」이 보도한,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완전히 그리고 단호히 금지하는”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중국정부의 성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임
- 1964년 10월 중국은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실험을 했지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폐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성명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서도 반복되는 내용이었음
-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힘
 -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과, 김책공업대학에 원자로공학과를 설치했다고 함
 - 북한은 1974년 3월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974년 9월 6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고, 1977년 7월 IAEA와의 협정을 통

1) 북한에 관한 주요일지는, 왕선택, 북한위기 20년 또는 60년 (서울: 선인, 2013) 참조.

해 영변 원자로를 IAEA가 사찰할 수 있게 됨

- 1970년대 중반 북한은 한국에 배치되었다고 알려진 전술핵무기에 대해 구체적 비난을 가하고 있었음

○ 1980년부터 북한은 자체 개발한 영변 5MW급 원자로를 가동하기 시작했음

- 북한이 자체 능력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임
-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기 전에 북한은 우라늄 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음
- 북한이 '화성5호, 6호'로 불리기도 하는 스커드 미사일발사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임

○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게 됨

- 1984년 5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소련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소련은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이 NPT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음
- 1985년 12월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음
- 1986년 12월 북한은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산하에 원자력총국을 설치하고, 정무원 산하에도 원자력공업부를 설치했다고 함

(2) 핵개발에서 비핵화로

○ 1989년 9월 프랑스의 상업위성(SPOT)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것을 공개하면서 북핵문제가 시작되었음

- 이 사진에는 북한의 5MW급 원자로는 물론 건설중인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이 들어 있었음
- 1988년 12월 북한과 공식접촉을 시작했던 미국은 북한에게 IAEA 안전협정 가입 및 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함

○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북한에 대한 핵불사용을 명시하고, 주한미군 핵과 동시 사찰할 경우 IAEA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북핵문제가 한반도 핵문제로 전환되는 계기였음
- 1991년 9월 부시 미국 대통령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를 선언하고, 10월에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에 합의
- 1991년 11월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1991년 12월 김일성,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입장, 즉 비핵화 의지를 북한을 방문한 솔라즈 미국 하원의원에게 함

-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북한의 공식 입장과 관련하여 인용되는 회담임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핵안전협정 서명을 발표하며, IAEA 사찰과 남북사찰의 동시 진행을 요구
-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북이 합의를 했고, 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의 검증을 위한 상호 사찰,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이었고, 북한은 외국 핵무기의 출입과 통과조항을 고집하지 않았음
- 북한은 1992년 1월 IAEA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고 5월 북한은 IAEA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IAEA의 사찰이 이루어짐

○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함

- 1992년 1월 미국의 아놀드 캔터와 북한의 김용순이 최초의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른바 훈령조각 사건으로 남북관계 악화
- 199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했다는 한미의 입장에 대해 북한

은 반발함

-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의 불일치를 이유로 북한의 미 신고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면서 만약 특별사찰을 강요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함

- 1993년 6월 11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강석주 부부장이 뉴욕에서 만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됨
 - 북한의 NPT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6월 12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NPT 탈퇴는 잠정 유보 상태에 들어가게 됨

- 남북갈등과 북미갈등으로 전쟁위기까지 진행되었지만, 1994년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이루어짐
 - 북한의 핵동결과 미국측이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교환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과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인 핵우산의 교환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이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진 이유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그 내용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 경수로 제공 전까지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 합의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임

-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동상이몽의 결과로 보임
 -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생각했고, 북한은 제네바 합의 직후인 1995년 1월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함

-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3월 다자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만들어졌고, 같은 해 12월 북한과 KEDO 사이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음

- KEDO 회원국은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체코, 우즈베키스탄 등이었음
- KEDO는 북한문제로 인해 만들어진 최초의 다자기구였음

(3) 비핵화에서 핵보유로

-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후,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1993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됨

- NPT를 탈퇴하게 되면, NPT 3조에 규정된 핵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어, IAEA의 규제 및 사찰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북한은 NPT를 핵보유국에게는 핵보유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비핵국가들에게는 핵보유를 불허하는 불평등조약으로 간주함에도, NPT를 근거로 NPT 밖에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게 됨

- 2003년 1월 NPT 탈퇴를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자신들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 것이"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보일수도 있을것"이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이 성명에서 북한은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음

- 따라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지의 시간 동안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이 정책전환의 이유로,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언급하고 있음
 - 2003년 4월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물리적인 억제력”, “전쟁의 억제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함
 -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2005년 12월과 2003년 10월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이라크와 같은 처지와 운명을 면할수 없었을것”고, “미국의 《힘의 정책》, 《핵정책》에 대처한 물리적억제력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졌을것”이라는 구절들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은 정세(situation)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성향(disposition)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5년 9월 19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교환한 공동성명 이후인 같은 해 12월 북한은 다시금 북미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유지해온것은 옳은 결단이었”고, “조미기본합의문의 파기와 경수로건설의 완전한 중단은 시간상 문제이러는데 대해 미리 내다보고 시기시기 필요한 자위적조치를 취한것이 얼마나 선견지명있는 결심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음
-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은 자신들의 핵개발을 정세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북한의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성향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음
 -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을 핵무기 보유의 원인으로 해석하곤 함
 - 일반적으로, 적으로 간주하는 세력이 기대와 달리 긍정적 행동을

할 때는 정세를 그 행동의 원인으로, 그 반대로 기대한 것처럼 부정적 행동을 할 때는 성향 때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즉 북한이 적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또는 최소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정치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원인은 상수인 성향이나 변수인 정세로 귀결될 수 있는 바, 무엇을 원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현재적 시각에서 미래예측이 다르게 나타나게 됨

2. 비핵화에서 핵보유의 “부득불 장기화”로

(1)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 2002년 10월 미국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중국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됨
 - 북미 양자대화는 물론 3자, 4자, 5자 등의 회담이 제안이 나왔을 때, 북한은 “조미접촉에서 3자회담을 거치지 말고 직방 6자회담을 개최하며 거기에서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북한은 6자회담 기간 동안, “자위적핵억제력”이나 “세력균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실제 핵실험을 하며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 반하는 담론과 정책을 생산했음
-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핵문제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음
 -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음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음
 - 제네바 합의와 같은 소극적 안전보장으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함
 -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 공동선언이 준수,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음
 -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함
- 9·19공동성명 2항과 3항에서는 북미, 북일의 관계정상화와 6자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약속되고 있음
- 방법론으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이 합의되었음
- 9·19공동성명 4항이 가장 논란이 되는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것임
-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평화보장체계란 표현을 쓴 바 있음
 - 한국이 평화체제를 의제화한 것은 노태우정부 시기가 처음이고, 그 후 정부마다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강도는 상이했음
 -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1990년대 후반 4자회담에서 보듯이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자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결국은 남북미중의 4자회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
 -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도 논의의 대상이었음

- 9·19공동성명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연계한 문건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북한의 핵실험과 9·19공동성명의 붕괴

- 9·19공동성명을 통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음
 - 북한은 핵실험을 한 이유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언급하고 있음
 - 이 시기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반대하고 있지 않았지만, 핵군축과 핵폐기를 새로운 의제로 설정했음
 - 핵실험 직후인 2007년 1월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읽기란 어려운 상태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함
-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DA 사건에서 촉발된 대북 금융제재가 해소되면서 6자는 북핵시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면 다른 국가들이 지원을 늘려가는 인센티브 방식의 2·13합의를 도출했음
 - 2·13합의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초청하며, 사용후 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면, 북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고,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이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일관계의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이라는 6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만들기로 합의했음
- 2007년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이 만들어지기 직전인 10월 3일에는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음
 -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였음

- 불능화는 자동차에서 엔진을 제거하는 것에 비교되는 조치였음

-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교환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종착역에 접근하는 듯했지만, 6자회담 참여국의 국내정치적 이유로 인해 결국 9·19 공동성명의 실행은 실패로 귀결되었음
- 2009년 4월과 5월 북한은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대응했음
- 2·13합의 당시 미국의 네오콘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2·13합의는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 주장한 바 있음
-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중단되었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억제력강화로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3) 핵보유의 “부득불 장기화”

- 북한은 권력승계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1년 7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방문으로 시작된 북미 고위급회담-미국의 표현은 'exploratory round'-을 지속하고, 2012년 2·29합의에 도달함
- “조미쌍방은 9·19공동성명리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것을 인정”
-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함”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것임”
-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

거리미싸일발사, 냉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립시 중지하고 우라니움 농출활동림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함”

- 그러나 북한이 조선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영문보도문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발표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음
- 미국측 발표에는“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until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란 표현이 없음
-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와 경수로의 제공을 논의하겠다는 구절이 미국측 발표에는 없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에서 “강도 높은 모니터링”(intensive monitoring)을 언급했지만 북한측 발표에는 이 부분이 없음

- 미국은 2012년 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었을 것이고, 북한에게는 인도적 지원이 포함된 북미 직접대화가 미국이 김정은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매력적인 외교적 수단이었을 것임
- 이 시점까지만 해도 김일성의‘유훈’인 비핵화는, 평화체제의 수립과 연계되어 있기는 했지만, 북한도 동의하는 의제였음

-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포함된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운반로켓 ‘은하-3’을 통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영양지원을 포함한 북미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은 회담과정에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북한이 비공식적이지만 위성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평화적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발사 립시중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종일관하게 주장하였다. 그 결과 2.29조미합의에는 《위성발사를 포함한 장거리미싸일발사》나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가 아니라 《장거리미사일발사 립시중지》로 명기된 것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임

－ 4월 13일 북한은 광명성-3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위성발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음

○ 북한은 4월 13일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을 통해“김일성-김정일 헌법”을 만들고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으로“핵보유국”을 명문화했음

－ 2012년 중반부터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조선반도비핵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음

－ 2012년 8월 31일 북한 외무성은“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기본장애”라는 제목의 비망록--“핵문제해결을 가로막고있는 적대관념”,“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뿌리”, “적대시정책포기는 핵문제해결의 선결”등 세 부분으로 구성--을 통해“위성을 쏘올리는 운반로켓나 탄두를 나르는 미사일이나 그 추진기술이 유사한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다른 국가의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29합의의 파기가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전개함

－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의 핵무기고가 계속 확대강화되는것”이고, 이 길로 가게 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가“부득불 장기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전이 12월 12일 위성발사를 했고, 이는 핵보유의“부득불 장기화”에 대비하는 운반체 실험이라 할 수 있음

3. 핵보유의 “영구화”로

(1) 핵보유 “영구화”의 법제화

○ 북한 외무성은 2013년 1월 14일 김정은정권 외교정책의 기초가 될 수도 있는 비망록을 발표했고, 이 비망록에서 북한은 비핵화 또는 비핵지대화를 생략된 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와 평화협정을 연계함

－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에서 적과 위협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적과 위협은 북한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라는 주장임

○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2087호를 채택하자, 그 다음 날인 23일 북한 외무성은 인공위성 발사가“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주장하며,“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했고,“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 북한은“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차원에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음

－ 북한은 핵실험 이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루었다고 주장함

○ 북한은“핵보유국 지위의 영구화”와“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을 공표함

－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

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한다고 주장함

－ 김일성이“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망치를!》이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했으며, 김일성이“병진로선을 천명하시고 자립적민족경제와 함께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해주시었기에 우리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대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는 방식으로 병진노선을 역사를 통해 정당화함

－ 그러나 김일성은 병진노선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 예를 들어 “정세나 당사업방법 같은 문제는 리론적으로 잘 분석하고 전개하면 되지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그 결과가 물질적성과로 나타나야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여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말한 바도 있음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1일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대한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국내법으로 핵보유를“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함

－ 주요 내용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

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핵시험의 안정정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무기급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과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등임

－ 핵보유를 영구화하지만, 핵확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음

2013년 5월 22일 김정은의 측근인 최룡해(崔龍海) 총정치국장이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게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음

－ 2013년에 들어서 핵억제력의 능력과 결의를 보여준 북한으로서는 대화가 재개된다면, 재개 자체를 핵억제력의 인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적 진술과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자는 정도임

－ 북한은 6자회담을 핵무기에 대한 최소한의 목인을 위한 장으로 생

각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음

- 최룡해의 방중 직후인 6월 7일-8일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국가 불인정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 합의에 대해 미중이 동의했음
 -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요구했다면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고, 미국은 북한의 병진노선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중국은 병진노선을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북정책의 3원칙을 바꾸지 않았음²⁾
- 미중정상회담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표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음
 - 북한은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의 형태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핵군축과 평화체제를 연계하는 의제설정을 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 및 비핵화에 관한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중, 미중, 한중, 한미일 전략대화가 진행된 바 있지만,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북한의 선조치가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미일은 2·29조치를 넘어서는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중국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연내에 재개되지 못함으로써, 미국에게 신행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에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임

2) EAI 안보넷. 2013.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EAI 논평 29호.

(2) 핵보유의 영구화와 핵억제담론의 심리

-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핵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억제력 확보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방어적이든 공격적이든 핵억제력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핵억제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능력, 인정, 결의를 필요로 함
 - 첫째 물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실험, 핵운반체 실험,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이 필요하리라 예상됨
 - 둘째 핵억제력은 억제 대상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셋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핵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는 낮은 수준의 분쟁에서 단호함을 보임으로써 핵억제력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음
- 특히 북한처럼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수정주의 국가는, 적이 단호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억제력이 적절하게 기능한다면 대량의 핵무기 보유 및 군비경쟁을 필요 없게 만들고 위기와 대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더불어 북한과 같이 작은 수의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저비용 고효율의 핵억제가 이루어진다면 자원을 경제로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음
 -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은 이 사례로 보일 수도 있음
- 그러나 작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억제의 대상에게는 제거의 유혹을 느끼게 하고, 작은 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그 숫자가 주는 잠재적 취약성 때문에 그 무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포기하려 할 수 있음
 - 이것은 작은 숫자의 핵무기를 가질 때의 핵억제력의 역설이라 할 수 있음

II. 북한핵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시각

1. 미국의 시각: 비확산인가 비핵화인가

(1) 미국과 1차 북핵위기

- 미국에게 북핵문제는 단국시대 미국패권전략의 핵심적 과제였음
 -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각기 진영 내에서 핵무기체제를 위계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비확산체제를 유지하였음
 - 냉전의 종언으로 미국은 새로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핵무기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음
 - 1차 걸프전쟁은 냉전의 종언을 상징하는 동시에 1차 북핵위기의 직접적 배경이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이라크의 핵개발에 대한 IAEA의 사찰이 불충분했음을 드러내면서, IAEA의 신뢰성이 손상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음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핵통제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1995년 비확산조약(NPT)의 영구화로 결실을 맺었음
 - 1차 북핵 위기는 냉전의 종언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체제 보존 노력과 미국의 새로운 군사적 패권 수립 의도가 충돌하면서 빚어진 것이고, 1994년 북미의 제네바합의로 잠정적인 봉합에 이르렀음

(2) 미국과 2차 북핵위기

- 2차 북핵 위기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배경으로, 부시정부의 대테러전쟁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제네바합의의 틀을 깨어지고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문제로 2차 북핵위기로

발생함

- 미중의 군사적 대립은 협력으로, 혹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군사적 경계를 소홀히 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이해상관자(stake-holder)로 인정, 포섭, 통제를 시도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그 사례로, 중국의 주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틀이 만들어짐

-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국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더 넓은 틀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자 이것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결국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등이 실행되지 못했고, 이는 부분적으로는 이 합의들에 반대하는 미국의 국내정치세력 때문이기도 했음

(3) 미국과 3차 북핵위기

-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탈냉전기 세계질서 전환의 결정적 계기였고, 이른바 G-2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음
 - 2009년부터 시작된 미중의 경제대화가 새로운 양국관계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음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한국의 이명박정부가 대북 강압정책을 실시하고, 미국 오바마정부가 경제회복과 아프간전쟁 수습의 늪에 빠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임
 -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북중관계를 악화시킨 사건이기도 함

-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기도 했음

- 2010년 후반부터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선택했음

-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예를 들어 중국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안정에 대한 양국의 공통 이해를 확인했음

- 2011년 5월 9-19일 미, 중 전략 경제대화에서는 기존의 경제대화에 전략대화가 추가되었고, 이 역시 중국의 부상을 반영하는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북핵문제는 2012년 5월 3-4일 제4차 미, 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란의 핵문제, 시리아, 수단정세와 함께 전략대화의 의제로 채택되었음

(4)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3년 4월 하원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이 비핵화를 의제화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 말함

-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핵확산만 하지 않는다면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 2013년 6월 8일 미중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널런의 브리핑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국가는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음

- 어느 국가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깊은 공동협조와 대화를 함께 경주할 것임.

-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미국은 북한의 현재 위협

으로부터 미국 자신과 미국의 동맹을 지키기 위한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하였음. 양 국은 북한의 핵 확산 능력을 저지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북한의 경제적인 발전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압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전략적 인내의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국에 아웃소싱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함

- 따라서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한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로 보임

(5) 미국의 국내정치와 6자회담

-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국이 북핵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미국의 경제위기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제고되고 있는 상황임

- 2013년 10월 미일대화가 끝난 직후,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만약 북한이 2·29합의로 돌아가거나 또는 NPT 복귀와 같은 결단을 내린다면 미국도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도 북핵문제를 남겨둔 채 임기를 마치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아시아로의 복귀 이후 한미,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세력균형 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유용한 명분이 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및 친중화(親中化)를

전략적 손실이라 생각할 것임

- 2013년 11월 20일 국가안보보좌관 수잔 라이스는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power relations)로 설정된 미중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핵을 첫 번째 의제로 언급한 바 있음
 - 재균형정책의 핵심으로 지역 내에서의 동맹강화를 언급했고, 그 순서는 일본,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이었고, 동맹들 사이의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북핵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함
 -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할 것임을 표명함
 - 동맹의 강화 및 제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힘
 -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³⁾
- 미국은 북핵과 관련하여, 비핵화인가 비확산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임

2. 중국의 시각: 신형대국관계의 실험장으로서 6자회담

(1) 중국의 6자회담에 대한 평가

- 중국은 미국에 대해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이 제시하는 핵심이익은, 첫째 국가 기본제도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호, 둘째 국가주권과 영토수호, 셋째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3) Remarks As Prepared for Delivery by National Security Advisor Susan E. Rice. At Georgetown University, Gaston Hall Washington D.C. Wednesday November 20, 2013.

발전임⁴⁾

-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에서 북핵은 가장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임
 - 중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음
 - 북핵불용과 한반도 비핵화가 외교관계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임
-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대체할 메커니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최대의 수혜자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었음
 - 6자회담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신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고자 함
 - 2013년 10월 APEC에서 시진핑주석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방공식별구역 설정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일방적 외교행태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라 할 수 있는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결정한 바 있음

(2) 북중관계의 재구조화와 6자회담

- 사실상 동북아질서 재편을 위한 '베이징 프로세스'인 6자회담의 장국가 중국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을 결박하

4) 하영선 편,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복합과 공진 (서울: EAL 2013).

고 북한의 친미화(親美化)를 막기 위해 기존 제도인 6자회담을 필요로 함

- 미국의 동북아에서 재균형정책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의 고려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일 수밖에 없음

○ 현재의 동북아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측면이 있음

- 문제는 중국이 북중, 미중, 한중 협상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불러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가의 여부임

○ 2013년 후반에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 북한, 한국 등과 접촉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자신했지만, 결국은 2013년에 6자회담의 재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임

- 신행대국으로서 중국외교의 실패로 기록될 수 있음
-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함

○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중재안이자 본 협상의 의제로 제시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첫째 6자회담 참가국의 회담재개 동의와 9·19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이행,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 셋째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사항 해결, 넷째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및 북한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다섯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노력, 여섯째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유지와 5개 실무그룹 회담의 가동, 일곱째 6개국 협의의 정례화 등이었음

- 결국 한미일이 이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6자회담 재개의 관건임
- 한국의 6자회담에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고 한국이 6자회담과 관련하여 어떤 전제조건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 재개가 결정될 수 있음

- 따라서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이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미래 및 동북아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때, 6자회담은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⁵⁾

3. 러시아의 시각: 신동방정책과 6자회담

(1) 신동방정책

○ ‘강한 러시아’를 위한 국가체제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주변환경 창출차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정적 안보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함

- 미중이 각축하는 동북아 패권구도가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고, 신동방정책으로 입지 회복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이 동북진흥전략의 명목으로 북한의 협력고리를 강화하자,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로 맞불을 놓으면서 북한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의 공세적인 남북러 삼각협력의 추진은 북러 양자협력을 보완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임

○ 신동방정책의 성패는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회복 및 강화와 맞물려 있음

-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경쟁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매개로 북한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동북아에서 영향력 회복의 바로미터는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일찍이 90년대 초 체제전환기 이래 대북한 정책에 대한 전략적 판단 미스로 인해, 북한을 중국의 구심력에 빼앗겼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영향력을 회복하

5) 이희욱, 2012. “이명박 정부의 대중국정책 평가.” 한반도 포커스, 3·4월호.

고 이를 대한반도 정책의 지렛대로 삼고자 함

- 따라서 러시아가 어렵사리 회복한 북한과의 끈을 선부른 서방과의 공조정책 속에서 함몰되는 것을 경계함

○ 냉전시기 세계질서의 균형자였던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을 다자기구의 구축과 활용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지속과 이를 항구적 다자기구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가 존재하고, 이는 6자회담 내 '동북아 평화안보메커니즘 실무그룹'의 장국으로 결과됨

○ 러시아의 대한반반도 정책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긍정적”(neutrally positive)이라는 입장으로 표현됨

- 동북아와 한반도가 미중 양강구도로 고착되는 경향에, 통일한국이 러시아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역내 질서의 재균형화는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됨
-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의 동부지역의 안정적 환경을 창출하고 러시아 극동개발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2)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 인식

○ 핵문제에 관한한 러시아도 강대국 이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로의 진전이 NPT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않음
- 세계 2위 핵전력을 보유한 러시아가 핵도미노 현상으로 자국의 국제적 핵지위가 저하되는 것을 용납치 않는 것임
-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지만, 그 방법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속에서 해결되는 것임. 충격과 압박이 아닌 정치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구소련 비핵화라는 결실을 이룬

국제적 공조하의 “협력적 위협감축 프로그램(CTR)” 방식을 원용한 방식을 고려함

- 중국이 2013년 12월 구소련 연방의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핵우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건이 향후 중러관계와 러시아의 핵정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 초기 참가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한반도문제에 영향력 저하를 경험한 러시아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이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함

- 장기적으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적 지향점임

○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북핵에 대한 푸틴의 인식은 상술한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핵 기본노선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임

- 한국정부는 북핵 불용에 의미를 둔 반면, 러시아는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며 6자회담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둠
-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의 바람과는 달리 '북핵 불용' 등의 구체적인 언급없이 '한반도 문제'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대치함
- 그러나, 한러정상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에는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 완곡히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4. 일본의 시각: 북한의 위협과 관계정상화의 이중주

(1) 정상화와 위협의 공존

○ 일본의 외교테이블에는 전후의 최대 외교숙제의 하나로 북일정상화라는 과제가 놓여있음

－ 2002년 일본은 북일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바 있으나, 납치문제와 북핵문제로 인해 좌초된바 있음

- 한편, 일본은 중일갈등 속에서 북핵이라는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봉착해 있음
 - － 북핵을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를 위한 심리적 견인차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핵위협을 활용하고 있음
 - － 2013년 10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한다는 발언을 했음
 - － 중일갈등 속에서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설치를 결정한 바 있음

(2) 일본의 북핵 인식과 전략

- 포괄적으로 일본은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일치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013년 2월 제3차 북핵실험때, 아베정권은 한미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바 있음
 - －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와 납치문제 해결은 상반된 방향으로 인해 일본의 딜레마임
- 북핵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한정적이라 볼 수 있겠음
 - － 사실, 북한은 핵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고, 미일동맹의 하위축인 일본과의 협상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왔음
 - － 근래, 2013년 8월 22일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만남, 11월 6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의 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대북 핵전략의 행동반경은 한미일 삼각축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음

- 그러나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일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북핵과 관계없이 북일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이치마 이사오(飯島勲) 내각관방참여가 2013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난 바 있고,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북한 관계자와 접촉을 하고 있음
 - －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방문 및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처럼 아베정권도 북일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음
 - －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 방법으로 북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Ⅲ.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1. 동력회복을 요하는 북핵문제

1) 북핵 문제의 특성

○ 악순환 구조의 반복

- 도발→위기고조→일괄타결→합의파기 구조의 반복

○ 북·미간 적대감 심화

-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미·북간 극단적인 불신 및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로 적대감 심화
- 미국은 북핵시설과 능력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의 가시적 조치로 평화협정 및 불가침선언, 그리고 핵포기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

○ 합의의 구속력 한계

- 기존 합의의 명확한 이행 보장장치의 부재에 따른 태생적이며 구조적인 모순 내재
- 북미간 상호 신뢰 취약에 따른 합의의 실질적 이행 불가능

○ 미·중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접점

- 미국은 북핵문제를 미국의 한반도·동아시아 안보문제이자 세계 핵질서 유지를 통한 미국의 패권지속에 절대적 해결문제로 인식
- 중국은 북핵문제가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특히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한반도 문제 개입을 정당화하는 하는 등 자국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2)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국제정세의 변화

○ 북한의 핵보유국가 지위 추구

- 헌법수정(2012.4.13.)을 통해 헌법 전문에 핵보유 지위 명시 및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국가전략으로 채택(2013.3.31)
-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및 투발수단으로서 미사일 개발 통한 사정거리 확대 도모 등 핵능력의 고도화 추구

○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 총 3차례의 핵실험(1차 핵실험: 2006.10.9, 2차 핵실험: 2009.5.26, 3차 핵실험: 2013.2.12.)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
-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정세가 급격하게 변화
-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중국이 개입된 보다 복잡한 게임 양상으로 전개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를 유인한 것이기 보다 오히려 이를 반영한 전략적 행동
-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이후 대화론 제기 및 주변국 정대화 및 주요인사 방문으로 진정 국면 진입
-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과 북한의 비핵화 선조치 주장 사이에 평행선

2. 북핵문제의 쟁점과 새로운 접근

1) 북핵문제의 쟁점

㉠ ‘비핵화’대(對) ‘체제안전보장’

- 북한의 협상목표를 평화협정 체결 및 북한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불가침 선언 등으로 설정, 양대 조건이 실현되면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
- 미국은 협상목표로 “완전한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를 추구,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천명이 이뤄져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 해법에 관한 근본적 입장차이

- 북한은 핵문제의 해법을 ‘핵동결’과 ‘보상’을 맞바꾸는 출구론적 입장에서 ‘동시행동’의 원칙 고수
- 미국은 입구론적 입장에서 ‘핵포기’와 ‘보상’을 ‘순차행동’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
-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이나 ‘순차행동’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괄타결’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

㉢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존재 여부

- 북한은 UEP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
- 미국과 한국, 일본은 UEP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으며, 따라서 UEP 프로그램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UEP 프로그램의 존재가 확인된 바 없지만 만일 UEP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2)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

■ 미국의 전략

㉠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 유도

-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전제조건인 평화협정 체결 및 불가침선언은 결국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한 미군의 주둔목적 재설정 및 동북아 역내 다자간 지역안보체제 확립을 의미
- 따라서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경제·에너지 제공, 미·북 및 북·일 수교,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추구 고려

㉡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체제 안정 보장

-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북아다자안보체제’로 확대 발전 추구
- 미일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대만, 아세안 등과 함께 중국을 포위 내지 봉쇄하면서 중국의 패권 추구 견제

㉢ 북핵문제를 통해 “핵없는 세계” 구현

- 북핵 확산 방지는 곧 NPT체제의 강화를 의미, 이는 곧 전지구적인 핵확산방지구상 강화 및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을 통한 “핵없는 세계” 구현의 필수적 요건
-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명분 확보

■ 중국의 전략

㉠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의 분리

- 북한의 핵무장이 대북협상을 넘어 한국, 일본의 연쇄적 핵무장 우려
-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심화 초래
- 따라서 북핵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도모하고, 북한과의 관계 강화도 지속하여 아시아 역내 및 대북영향력 증대 추구

㉡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방지 및 안정성 유지

- 북한의 도발행동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한반도 문제 개입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 초래
-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식 안보협의체를 구축
- 북한의 전략적 효용성이 존재하는 북한체제 존속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

3)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고조와 진정

㉠ 북한의 핵보유국가 지위 추구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 악화

-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상황이 북한과 한국, 미국간의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급격하게 악화
-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남위협을 통한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시도

㉡ 미·중간 한반도 안정적 관리 모색

-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한·미간 전시 작전권 재연기 협의 등 한미동맹의 강화 움직임
- 북한의 핵추구에 대응한 한국의 안보확실성 추구는 궁극적으로 안보딜레마의 긴장관계로 확산 초래
- 심화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 실패시 더 큰 비용과 부작용 초래할 것이라는 데 미·중간 이해관계 일치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합의 도출 필요

- ‘9.19 공동성명(2005)’과 ‘2.13 합의(2007)’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동결→폐쇄→불능화→폐기’라는 핵폐기의 행동 로드맵을 설정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이행에 대한 행위자간 상호불신으로 갈등 노정
- 2.13 합의 이후 플루토늄 외에 농축우라늄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미사일 발사 능력이 향상되는 등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변화된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
- 3차 핵실험에 따른 냉각기 이후 지난 2013년 9월 미중간 접촉, 6자회담 핵심당사국인 한-미-중 수석대표 연쇄회동, 베를린과 런던 등에서 열린 반민반관 대화(1.5트랙)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용의 입장 개진 등 활발한 북핵 관련 대화 재개 움직임
- 북한은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

3. 6자회담의 의제 논란과 관련국의 입장

1) 회담 개최 논란과 방향성 모색

- 비핵화 선조치 요구 대(對) 회담 재개 우선
 - 회담 재개 위한 조건을 다는 것은 비현실적
 - 회담의 형식을 다양화해서 북핵해결을 위한 다면적 접근 필요
 - 굳이 6자회담이라는 형식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와 병행해서 북미 양자담판, 남북 핵회담, 한미중 전략대화, 북미중 대화 등 양자, 삼자, 6자 등 다양한 회담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
-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입장차
 - 북한은 비핵화 문제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제재 해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모든 아젠다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 놓겠다는 입장
 -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 조치와 동시성 확보를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다루겠다는 입장
 - 하지만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회담 처음부터 비핵화만을 의제로 고집할 경우,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우려
 - 비핵화 의제를 포기하지 않되, 회담의 실질적 의제로는 쌍방의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궁극적으로 향후 열릴 6자회담이 북핵검증을 통해 상호불신을 제거해 나가고 합의와 약속의 이행이라는 로드맵의 구체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장(場)이 되는 것이 중요

3) 관련국 입장

■ 한국·미국·일본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차단위해 'UEP·미사일 문제'에 집중
 - 한·미·일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핵 포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
 -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개발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

■ 북한

-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관철 추구
 -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
 - 동시에 이를 그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아왔으며,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이나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 폐기는 결코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조건 없는 회담의 재개가 우선이라는 점을 고수

■ 중국

- '7개항 중재안'제시 통한 책임적 역할 부각
 - 중국은 '우선 조속한 회담 재개'를 주장하며 7개항의 중재안 제시하는 등 책임적 역할 부각
 - 북핵문제의 방치가 자국의 이익에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기본인식 반영
- *다만, 7개항 중재안은 비핵화 선조치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과는 일정한 온도차 존재, 추가적 협의 필요

■ 러시아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립자적 입장 고수

-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동시에 회담 재개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
- 즉, 러시아는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전제조건에도 반대하며, 북한도 회담 재개에 어떤 전제나 요구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4.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성

■ 북핵문제와 한국의 역할

㉠ 북핵문제의 재부상에 따른 남북관계의 위축

- 현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더 국제화된 양상으로 전개, 반면에 남북한관계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국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여러 종속변수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고 상황
- 특히 남북한이 현재와 같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후적으로 관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수동적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은 남북관계라는 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본적으로 불가능
- 2005년 6.17 면담을 통해 한국이 대북 설득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7월 6자회담 재개가 이뤄졌고 결국은 9.19 공동성명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 이를 시사
- 박근혜 정부의 북핵 역할은 반드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 채널을 견고하게 확보해야만 중국과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서 우리 입장 관철 가능

㉠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 모멘텀 조성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북핵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소 완화하여,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위치로 전략적 이동을 고려할 필요
- 이미 국제 문제화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로 하는 것은 신뢰프로세스의 본격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간영역에서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보다 신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후 외부환경의 변화과정에서 본격적인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 모색

- 북핵 이슈가 미중간 복합적 이해관계에서 다뤄지면서 한국의 존재감 및 역할 왜소
- 한미공조 활용한 대미 설득과 남북관계 이용한 대북 설득, 그리고 한중 협력 통한 대중 설득이 선순환으로 결합해야 북핵문제 해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가시화
-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내건 양대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체결 및 불가침선언 등은 상호 협력과 신뢰가 구축된 뒤에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북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여하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1차적 관건

㉠ ‘동아시아 패러독스’ 극복

-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은 미미한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에 벗어나 역내 국가들 간의 협

- 력의 축적→신뢰의 구축→협력의 심화를 이루겠다는 것
- 이는 결국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내 국가간의 공동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쉬운 비 안보·경제 이슈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 박근혜 정부의 동 구상은 남북 간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 중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쉬운 연성 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우선 모색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경성 이슈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비롯한 양자 또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때 가능
- 박근혜정부가 ‘동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주요 행위자가 동아시아 협력에 대해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접근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 미국과 중국은 공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의 추구가 용이치 않음을 시사
- 다만 한국 입장에 우선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고,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공동대응, 기상협력,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 이용 등과 같은 연성이슈를 적극적 활용이 필요
- 아울러 한국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 안보협력의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국과 일본 등과의 파트너십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한 다변화 모색
-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접근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과 고위급 군사교류 내지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및 참과, 비전통안보 이슈와 관련된 상호 군사협력 내지 정보교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 남북관계의 주도권 공방

- 박근혜 정부 집권 5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이 될 ‘제2차 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2013.11.7.)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2대 목표로 제시 및 이를 달성키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 특히 10대 중점 추진과제에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제1차 기본계획’중 10.4선언 관련 조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평화체제수립’등의 추진과제를 삭제하고 대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명시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동계획을 “단절계획, 대결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2013.11.14.)
- 북한의 이러한 반발은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핵심이었던 10.4선언 관련 중점추진과제들이 삭제되고, 대신 북핵문제 해결, 북한 인권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

·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문제가 관건

- 향후 남북관계는 이 기본계획을 둘러싼 남북 간의 주도권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 농후
- 특히 이번 제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가 가장 핵심적 과제로 부각될 전망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는 곧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을 확보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도모하는 관건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패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 무력화

- 북한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기저(基底)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이라는 국가전략의 추구 일환
- 이 과정에서 북한이 당국간 대화 제의, 자진 남북했던 우리 국민 6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임을 강조하면 송환하는 등 유화적인 평

화공세를 펼치는 데에는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미국과의 대화, 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

- 물론 이러한 북한의 의도의 또 다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현 국면에서 유화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남북관계 개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존재
- 박근혜 정부의 확고한 원칙에 바탕한 대북정책인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장된 평화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 대응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성도 필요

■ 남북관계의 선순환 통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비교적 낙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
- 집권 2년차에 접어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좁은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뿐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간의 신뢰 구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인식에 기초

- 북핵문제가 다시 6자회담 내지 북미 양자간 대화의 틀에서 논의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사실상 남북관계는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종속 변수화 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점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한 템포 빠른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시키며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고려가 요구
- 그간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정부의 전략과 대응의 실패 측면도 있다는 점을 냉철히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절실

◦ 남북정상회담 통한 신뢰프로세스 추동력 확보

- 박근혜 대통령이 유립순방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단순히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 아닌 실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남북관계를 선순환적으로 풀어 가는데 효과적
-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신뢰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신뢰구축과 이를 통한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도출의 첫단계
- 이명박 정부때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상호불신과 우리 사회의 내부적 갈등만 키웠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가급적 투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지금처럼 남북간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어 상호 불신이 심화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이 북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 재개여부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동시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

·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유연한 대북 접근

- 박근혜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일관된 추진과 병행하여 북한의 오해와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강구
- 예컨대, 북한도발로 취해진 5.24조치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 투명한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모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이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조치
- 애초‘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취지는 남북관계를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통해 진전시켜나가자는 것이지, 이것이 성문화된 족쇄로 작용해서는 곤란
- 따라서 큰 틀에서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박근혜 정부의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각론적으로는 국회의 동의와 지원을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도 효과적
- 남북간 당국간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트랙 1.5 또는 트랙 2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및 민간 공동체가 참여토록해 폭넓은 여론수렴과 정책반영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

IV. 국제사회의 비핵화 추진 사례 분석 및 평가

1. 핵 포기 사례 분석

■ 핵 포기 사례 비교

국가명	개발시기	개발 수준	개발 의도	포기시기	포기 사유
리비아	70-03	농축우라늄 16kg	이스라엘 및 미국의 공격방어	2003년	미국 압박(PSI) 및 카다피 암살 공격
우크라이나	냉전 시기	ICBM 176기, 핵탄두1,240개	미-소 냉전	1994년	체제전환 및 강대국의 안전보장
남아공	70-93	핵폭탄 6개	소련 지원 앙골라의 공격 방어	1991년	체제전환 및 외부 위협 소멸(앙골라 주둔 쿠바군 철수)

1) 리비아 : 제재와 협상에 의한 핵폐기

■ 리비아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 1980년대 미국과의 대립 속에 HEU를 중심으로 한 핵무기 개발계획에 착수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주변국가들로부터의 안보위협은 없었으나,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개입을 억지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의 대립을 주도하는 정치적 위상 제고 목적
- 미국의 대 이라크 군사적 압박
 - 美國, 리비아 대통령궁 및 핵 의심 시설 폭격(1986.4.15)

- 부시행정부의 강경책과 사담후세인 체포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 리비아의 핵포기 과정

- 팬암기 폭발사건(1988.12)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 시도과정에서 핵 무기 계획 포기
 - 리비아가 팬암-103기 폭파에 연루된 정보원 2명(압둘 바셋 알 메 그라히, 알 아민 할리파)을 네덜란드 법정에 인계(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 → 이에 대해 미국은 UN의 대리비아 제재해제 방침에 동의
 -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팬암기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리비아 정부의 보상을 제시 → 이를 리비아 정부가 수용
 - 리비아는 사망자 가구당 1,000만\$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국제적 제재해제와 연계, 즉 보상금을 일괄지급하지 않고, 리비아에 대한 UN 경제제재가 풀릴 때 400만\$,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가 실행되면 400만\$,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리비아를 삭제하면 200만\$로 나누어 지급
 -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 WMD 포기를 요구 → 2003.3월부터 영국의 중재로 비밀협상 진행 → 핵계획 포기 선언
- 카다피, 핵포기 선언 및 IAEA 감시하 美英 전문가들 리비아 핵시설 철거(2003.12.19)
 - 20kg의 HEU와 1,000톤의 우라늄광석 농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핵포기를 선언
 - △모든 핵 및 화학프로그램의 폐기 △모든 핵활동을 IAEA에 공개 △사거리 300km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모든 탄도미사일 폐기 △NPT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적 사찰의 수용과 추가적 조치에 합의 △모든 화학무기 재고와 탄약을 제거하고 화학무기협약에 가입 △모든 활동을 검증할 사찰과 모니터링을 즉각 수용

- 이에 대해 미국은 '04.4.24 대리비아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트리폴리에 연락사무소 개설 발표
- '04.9.21 미국은 대리비아 통상금지, 미-리비아 항공운항 금지, 미 국내 리비아 정부자산 동결, 리비아산 석유수입 금지 등을 해제
 - * 다만 테러지원국 명단, 군사 및 안보물품 거래 제한 등은 유지

■ 핵폐기 사유 및 평가

- 국제사회의 대 이라크 군사적 압박 및 불법 WMD 거래 금지 조치
 - 美英 군함, PSI에 의거 공해상에서 원심분리기 탑재 리비아向 화물선 나포 (2003.10)
 - 군사력이 열악, 美國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시 보복공격 不可
 - * 당시 리비아는 병력 약 15만, WMD 미보유
 - 地政學的 위치가 北韓과 相異, 군사공격시 自國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이 부재
- 유엔주도의 경제 제재에 의한 경제난(리비아의 취약한 경제구조)
 - 국가 재정 고갈 및 만성적인 실업(92~98년 경제성장률 1%미만)
-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술적 한계 인식
 - 핵개발연료 및 부품은 확보됐지만, 기술문제로 장기간 시간소요 전망
- 리비아 지도부를 설득시킨 영국 외교관들의 끈질긴 노력
 - 강경 일변도의 미국과는 다른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불신을 해소
 - 英國의 주선으로 美 CIA와 카다피간 직접 비밀협상, 2004년 美-리비아 국교 정상화

○ 카다피의 젊은 자녀들의 영향력

- 유럽 등 서방문화 경험에 있는 자식들의 직·간접적인 권유

○ 리비아의 핵포기 선언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장기화 △미국과의

신뢰 형성 △영국의 중재 △비공식적 협상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

- 또한, △핵개발 성과의 미약 △이라크 전쟁의 목도 등도 영향

⇒ 결국, 핵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

2) 남아공화국 : 인종차별 정권 종식과 외부위협 소멸로 자발적 핵폐기

■ 남아공의 핵개발 배경

○ 남아공의 대내외적인 정치·안보위협 대응 관련, 전략적 억지수단으

로서 핵무기 개발 추진

- 70년대 중반, 아프리카內 소련의 영향력 증대로 대외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 인접국인 모잠비크(1975.6)와 앙골라(1975.11)가 독립 직후, 친소국가로 전환되어 쿠바군이 앙골라에 5만명, 모잠비크에 1천명이 진주

○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 policy)'에 대한 국제적 압력 대처

필요성(인종분리정책 : '48-'59사이에 구체화된 흑·백 분리정책으로서, 흑인·백인간 참정권/결혼/주거지/교육 등을 차별화 하는 정책)

→ 서방세계로부터 고립 증대

- 소수 백인정권의 대내적 정권 취약성을 지역강국(regional power)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제고로 보전(補填)하려는 정치적 의도
- 자국 인종정책에서 비롯된 재래식 군사전력 증강의 한계성 인식(軍내 흑인 비율 증가시 소수 백인정권의 위협 증대 우려)

* 병력 : 74년 핵개발 당시 50,500(백인위주로 편성)

99년 병력은 143,400(백인 : 흑인 = 1:4 비율)

○ 서방진영으로부터의 고립 탈피 및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하는 미

국의 관심 유도 필요(일종의 '벼랑끝 전략' - brinkmanship strategy)

- 미국의 NPT 가입요구를 남아공이 거절하자, 미국과 프랑스는 남아공에 대한 핵연료 수출을 중지, 남아공은 유사시 외부의 지원 곤란 인식 자체 핵무기 개발 착수

- 76년 미국은 同 정책의 철폐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SAFARI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 제공 중단 ⇒ 남아공은 독자적 핵기술/연료 확보난에 직면

- 77년 11월 UN의 對남아공 무기수출금지 제재 결의안 채택 등으로 남아공의 국제적 입지 약화

■ 남아공의 핵개발 과정

○ 미국은 2차 대전중 '맨하탄 프로젝트(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의

우라늄 공급원으로 남아공을 선택, 美·남아공간 우라늄 농축기술 공동 개발, 남아공은 미·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양국에 우라늄 공급

- '57.7월 IAEA 가입 및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체결로 다수의 과학자/기술자를 미국에 파견 교육·훈련 실시, '65년3월 미 기술지원의 연구용원자로(SAFARI)건설

- 미국은 남아공의 NPT 가입을 중용하였으나 남아공이 미제의를 거부함으로써, '76년 이후 미·남아공 협력관계 단절, 미국의 농축우라늄 제공 중단 이후 프랑스도 對남아공 핵연료 수출 중단

○ 1974 Vorster 수상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시와 함께 지하핵실험장

건설을 승인, 이에 따라 1976년부터 칼라하리 사막에 2개의 핵실험장을 건설하였으나, 1977년 소련 정찰위성이 탐지 후 미국에 통보

→ 미국, 소련, 프랑스의 공동압력으로 폐쇄

- 1978.12 80% 순도의 HEU 생산, 1979.9 아프리카 남안에서 우라늄

탄을 이용한 최초 핵실험 실시함 당시 미국 정찰위성은 짧고 강력한 2개의 섬광을 탐지(2~4KT규모 추정) 이에 대해 남아공 해군중령“섬광이 남아공-이스라엘의 실험암호명인 Operation Phoenix에 의해 발생했다”고 증언하여 이스라엘의 연계 가능성을 암시

* 80년초 이스라엘은 디모나(Dimona) 핵발전소용 우라늄 550톤 구입 대가로 핵탄두 위력 증대기술을 남아공에 제공(이스라엘 '하레츠' 신문.'97.4)

- 이후 1982.12 핵폭탄 제조에 성공한 이후, 1989년까지 핵무기로 투발가능한 6개의 핵폭탄을 제조 완료

■ 남아공의 핵폐기 및 사찰

- 89년 8월'드 클라크 대통령'은 남아공의 국제사회 고립 해소를 위해 인종분리정책과 함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검토를 지시
 - 89.12월 원자력위원회, ARMSCOR사, 국방부 등으로 전문가 그룹 구성, 핵무기 해체방안 수립(동시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도 중단)
 - Y-Plant 가동 중단(90.2.1) → 핵무기 해체 시작(90.7) → 핵무기 해체 완료(91.6/핵무기 6발을 비밀리에 해체)
- 91년 7월 NPT 가입 및'91.9월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에 이어 동년 11월IAEA 핵사찰 수용(핵사찰 총 115회 수용)
 - IAEA는 92.8월부터 칼라하리(Kalahari) 사막의 핵무기 시험장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80년대 말까지 12-24개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해 왔다고 공식 발표('93.3)
- 93년 3월 드 클라크 남아공 대통령은 의회 연설시 핵무기 개발 및 폐기 사실 공식 발표, 화생방무기 개발/지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법을 제정('93.8)하여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제도적으로 차단

- 드 클라크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은 ① 과거 74-90년까지 6기의 핵무기를 생산·보유하였으며, 현재 전량 폐기되었고 개발정보도 모두 파기, ② 핵무기는 10-18KT 위력의 우라늄탄이었으며, 공격목적이지 아닌 단지 핵억지전략의 의도로 개발, ③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에 약 1천명이 종사하였으며, 그 중 400여명이 직접 프로젝트에 가담

- 93년 9월 국제 핵전문가들은 남아공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결론

■ 남아공의 핵폐기 사유 및 평가

- 흑백화해를 추진한 개혁 마인드의 클라크 대통령 집권('89.9)후 정치적 안정 증대와'인종 분리 정책'폐기 및 백인 통치 종식에 따른 조치
 - 소수 백인통치의 종식이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흑인국가의 핵보유시 아프리카내 他 흑인국가 및 불량국가(rogue states)로의 핵기술 이전 등 핵확산 가능성 우려
 - 인종차별 정치체제였지만 야당이 존재하여 점진적인 민주화 과정을 통해 평화적인 체제 전환 달성
 - 내부적으로 1989년 보수적인 Botha 정권이 물러나고, 진보성향의 de Klerk 정권이 수립된 것도 영향
- 아프리카 공산권국가들의 남아공 위협 감소
 - '88.12.22 남아공-쿠바-앙골라 간 평화회담 개최 및 조약 체결로 △나미비아의 독립 인정 △쿠바군 5만명이 앙골라에서 철수 등이 실현 → 국제적·지역적 안보환경 개선
 - 적대관계인 앙골라 주둔 쿠바군 5만명 철수 및 남아공-쿠바-앙골라간 휴전협정 체결(1988년)

- 미국 등 서방진영의 지속적인 압력과 건설적인 포용정책 병행 결실
 - 채택 : 무기수출금지, 인종차별 비판, 지속적인 핵비확산체제 참여 압력, 올림픽 참가 거부 등
 - 당근 : 미·남아공간 외교관계 개선, 강한 경제제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등 불참 등 등
- 자체능력으로 핵무기 개발·보유 및 자발적 폐기 실시, IAEA 사찰 수검에 적극협조 및 대통령의 핵개발/폐기 사실 공개 발표, 서방국의 포용정책 등 주변 안보환경의 개선과 흑인국가의 핵보유에 대한 우려 등이 주된 이유

3)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로루시 : 미·소 START와 미국의‘CTR 구상’

■ 핵폐기 과정

- 우크라이나 등의 경우는 자체개발이 아니라, 舊소련 붕괴 과정에서 自國 영토에 남아 있는 핵무기 보유
 - 우크라이나는 '91년 소련 해체 당시 자국내에 176개의 핵탄재 대륙간 탄도탄(ICBM)과 약 1,84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독립을 인정치 않는 러시아 극우파 대두 △크리미아 반도·도네츠크주 등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핵포기 보상 지원액에 대한 불만 △핵 강국으로 남고 싶은 욕망 등으로 인해 의회를 중심으로 핵포기에 대한 반발 여론 대두
 - 이후 Kuchma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핵 비보유국으로 NPT 가입
- 미국은 1992년 구소련의 해체로 신생독립국가에 방치된 핵무기의 안

전한 제거 및 이동을 위해“Nunn-Luga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을 추진

- 총 24억 달러의 비용을 소요, 4,800여기의 핵무기를 제거

- 카자흐스탄은 초기에 1967년 이전에 자국 영토 내에서 핵실험을 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NPT에 핵보유국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설득으로 핵포기에 동의

< 우크라이나 핵폐기 과정 >

- '92.5 우크라이나, STRAT(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1 조약상 의무(미소간 전략 핵무기를 7년간에 걸쳐 각각 30%와 38% 감축)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Lisbon 의정서 서명
- '93.3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시 전략핵 폐기에 원칙적 합의
- '93.11 우크라이나 의회 Lisbon 의정서 비준시,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하기로 한 조항 유보('94.2 유보철회)
- '94.1.14 미·러·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핵폐기 및 보상, 우크라이나 주권 인정 등에 합의
- '94.11 우크라이나 의회 NPT 비준
- '94.12 CSCE 정상회담 시 미국,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4국 정상간 「우크라이나의 NPT 가입과 연계된 안전보장 각서」 서명
- '96.6 Kuchma 우크라이나 대통령, 핵무기 폐기 완료 발표

- 우크라이나는 제거 전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으나 1992.5 자발적으로 핵무기 제거를 결정
 - 당시 176개의 핵탄재 ICBM과 약 1,84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
 - 1992.5 리스본 의정서 서명 : START-I 조약상의 전략핵무기 감축 의무를 이행
 - 1993.11 우크라이나 의회는 리스본 의정서 비준 시, 비핵국가로 NPT에 가입하기로 한 조항을 유보했으나 1994.2 동 유보를 철회, 1994.11 NPT 비준

- 1994.1.14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체결된 협정에 따라
 - 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발전용 핵연료 100톤 제공, 이를 위해 미국은 러시아에 6,000만 달러를 제공
 - ② 우크라이나는 10개월 이내에 200개의 핵탄두를 자국 외로 반출
- 이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각서에 따라 MTCR을 수용하였으며, 1996.6 모든 핵탄두가 제거되었음을 발표
 - * 미국은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4,700만 달러를 제공
- 2002년 1월 모든 전략폭격기가 제거·러시아로 이전·비군사적 용도로 전환되고, ICBM 사일로가 파괴됨으로써 완료
 - *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Project Sapphire"라는 비밀작전으로 1994.11.23 HEU를 미국으로 이송

■ 핵폐기 사유 및 평가

- 자체 개발이 아닌 舊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인수한 핵무기로 舊소련 및 동구권 안정을 위해 강대국이 전폭적으로 협조
 - 1994년 美國·러시아·英國은 우크라이나와 "핵 확산금지 조약가입에 관한 안정보장 각서"체결로 안전보장 약속, 주변국에 대한 안보 불안 및 우려 불식 계기 마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자안전보장 제공 후, 보유 핵무기 전체 러시아에 이관
 - 미·러·우크라이나 3국 정상 공동성명('94.1)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명시(START-I 조약 발효 및 우크라이나 NPT 가입시의 보장내용 열거)
 - '94.12 CSCE 정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PT 수락과 연계된 안전보장에 대한 각서(Memorandum)」 서명·발효, 이후 프랑스·중국도 우크라이나와의 쌍무적 관계차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
 - 클린턴 정부시절 美國의 비확산 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달리 보상을 전제로 한 예방적 방위전략에 기초

- 舊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후 우크라이나 군부 및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自國의 보호를 위해핵무기 지속 보유 주장

- 국제 사회 편입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보 및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 노력
 - Nunn, Lugar 美 상원의원은 경제/에너지 지원을 통한 舊소련국가 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Nunn-Lugar Initiative)마련(1991년)
 - 원자력 발전소용 대체 핵원료 우크라이나에 제공(1억 달러 상당)
 - 미국은 'Nunn-Lugar Program'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핵 폐기 비용으로 최소한 1억 7천 7백만 달러 지원을 보장했으며, 향후 총 6.7억불 지원
 - 핵폐기 비용과는 별도로 1억 5천여만 달러 상당 경제지원 약속
 - 구소련 국가들에 대해 원유·천연가스를 국제시세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하여 공급
 - 핵폐기 후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이 지하격납고(silo) 폐쇄, 핵오염지역 재생, 의료품 지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제보상 조치를 취함.

-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상존

- 이들 나라는 주변국이나 지역적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핵무기를 보유할 적극적 동기가 미약
 - 또한 신생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자본이 절실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

2. 핵개발 차단 실패 사례 평가

■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지위관련 개념 정리

-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 (NPT 제9조 3항, 핵무기 보유국)
 - － NPT상 지위 : 핵무기·핵물질의 IAEA 신고 및 검증·사찰 의무 면제, 합법적 핵물질 생산·보유, 군사 목적 핵활동 보장
-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5대 핵국(미·러·영·불·중)에 한정되고,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 － 제6차 NPT평가회의('00. 4월)시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핵보유국' 또는 '어떠한 특수지위'의 확보도 불확실
- 반면“nuclear club/nuclear family”란 통상 5대 핵국을 지칭하나 학자에 따라 ‘핵보유 의혹국’또는‘잠재 핵보유국’을 포함시키거나 등 지칭
 - － 예) 고르바초프 前 소련 대통령 WSJ('07.1.31) 기고문, 北 핵실험후 ‘welcome to the nuclear club’제하 이란 일간지 기사 보도내용

■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핵확산에 대한 국제적 제재

- 국제법적으로 NPT 未가입 국가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해당국가의 주권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아님
- 다만, UN헌장상 국제 평화·안전을 위협·파괴하는 핵확산 활동에 대해 UN안보리의 경고·제재 결의 채택 및 시행
 - － 98년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당시 UN안보리 결의안 1172호 채택

- 또한,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각 국가의 국내법, 양자·다자협정 등을 통해 제재 추진
 - － 98년 인도·파키스탄 핵실험시 미국의 국내법(글렌 수정안)에 의거 제재 실시
 - －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에 대해서는‘핵무기·제조기술의 확산 방지’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핵실험 및 핵무기 보유선언’을 방지하는 선에서 대응

■ 인도와 파키스탄 핵개발 사례 비교

구 분	인 도	파키스탄
핵실험 시기	•1차(74.5.18) •2차(98.5.11 3회, 98.5.13 2회)	• 98.5.28 5회, 98.5.30 2회
개발 배경	•주변국 안보위협 •국제적 위상제고	•주변국 안보위협 •경제적 문제 해결
개발 과정	•이 소련 및 중국지원 •2차례의 핵실험	•미국 및 캐나다 지원 •자체 핵능력 개발
미국과의 관계	•전략적 이해관계 고려 적극적 제재 자제	•미국의 필요성과 이해 관계 고려 양면적 관계 형성
NPT/IAEA 가입여부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불확실)	未가입 (핵보유국 지위 불확실)
특 징	•선제 핵타격 지양 •‘억지’를 강조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재래식 전력 보완 •‘공세적 방어전략’ 적용 •실질적 핵보유국 인정

1) 인도의 핵개발 성공과 미·인도‘핵협력 협정’

■ 인도의 핵개발 배경 및 경과

- 인도의 핵무기 보유 배경
 - － 초기에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국제적 위상 및 경제개발을 위한 예

너지원 확보(부족한 전력 생산) 차원에서 접근

-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62),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 적극 검토(국내지지 여론 확산)
- 특히, 중국의 핵실험('64.10.16), 수소폭탄 실험('65), 인공위성 발사('70) 등에 자극,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 시작
- 인도-파키스탄 전쟁시('72.11) 美 7함대 파견 압박에 대한 충격
- III소련의 붕괴에 따른 안보 버팀목 상실 관련 핵무장 본격화

인도의 핵무기 개발 경과

- 54. 5.14, 미국,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에 의거, 인도에 원자력 연구의 기반 제공
- 55년, 캐나다로부터 Cirrus-40Mw 중수로 도입
- 56년, 40Kw급 연구로 가동 및 100Kw급 중수 원자로 자력 제조
- 58년,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위한 장비 획득
- 74년 1차 지하 핵실험 실시(12~15kt 규모의 플루토늄탄)
 - * 인도 핵실험에 미국의 對인도 경제제재 부과
- 98.5, 지하 핵실험 실시/성공(5차례중 1회는 수소폭탄)
 - * 미국, 인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핵실험 중지, 군사용 핵물질 생산 중단 요구, 보상으로 민수원자력 협력을 제시하였으나 인도는 '군사용 핵주권 포기 不可' 입장 고수

■ 미·인도 「핵협력 협정」 체결

인도와 미국과의 관계

- 미국은 인도의 핵개발 과정에 적극적 제재 및 압력 未행사, 인도의 III소련 및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에 기인
- 인도의 2차 핵실험시 국내법(글렌 수정안)에 의거 제재 실시
-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 형성, 중국 견제 역할 수행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 적극적 제재 자제

추진 경과

- 05.7.18, 미·인도 「민간 핵협력구상」 추진 합의
- 05.12.~'07.7, 양국간 5차례의 실무협상회의 진행
- 06.3.2, 양국 대통령간 「핵협력협정」 합의(협정내용 구체화)
- 06.12.18, 부시대통령의 「미·인도 평화적 핵에너지협력법안」 서명
- 07.7.27, 양국간 「민간 핵협력협정」 최종 타결, 08.10.3 최종 서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핵시설 및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군수용(8)/민수용(14)으로 구분, 민수용 핵시설을 IAEA에 신고② 민수용 핵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협정에 서명③ 인도의 단독적인 핵실험 유예를 지속④ 다자간 「핵분열물질감축조약 (FMCT)」의 체결을 위해 노력⑤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비보유국에 기술이전 방지 및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 지원을 재확인⑥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협조 및 「핵공급그룹 (NSG)」 지침 준수를 통한 핵물질·기술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약속 |
|--|

미국의 對인도 핵정책 전환 배경 및 의도 분석

- 국제안보전략 환경의 변화 및 인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이해관계(對중국 견제)형성 및 인도의 경제적 잠재력 고려, 핵시설 및 기술 관련 수출기반 모색에 기인
- 인도의 핵무기 개발수준·규모 및 비확산 가능성 등 현실 고려 '핵강국'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폐기가 불가하여 실질적인 인정 및 일부 핵시설이나 비확산체제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확산체제의 유지에 부합
- 인도의 경제개발 관련 원자력발전 시장의 급팽창 예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연료/장비/기술 등의 안정적 공급 추구로 미국이 비확산을 이유로 인도 시장을 포기시 경제적 실익 확보 不可
- 인도사례는 NPT 未가입국 인도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고,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비확산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가

④ 「美-印 핵협력 구상 과 국제 비확산체제 위반내용

- 「핵 비확산 조약 (NPT) 정신 및 규정 위반으로 美-印 「핵협력 협정 은 사실상 인도의 '핵무기국' 지위를 인정
- NPT 제5조는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을 위하여 '비핵무기국'인 조약 당사국에 대한 핵기술·물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조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인도와의 '민간 핵협력협정' 체결은 제5조 위반
- IAEA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는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미국이 인도에게만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구분, '민간 핵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조치협정 와 「추가의정서 체결에 협조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 NSG 제4조의 Safeguards 규정은 수입국이 '모든 방사능 물질'과 '특정한 핵분열 물질'에 대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때에만 '민감품목'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인도에 대한 핵물질 및 핵기술의 이전은 NSG Guideline 위반으로, NSG의 결속력 이완 및 국제비확산체제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 초래
- 인도와의 민간 핵협력을 위해서 미국은 민감한 핵기술·핵물질의 대외이전을 통제하는 다수의 국내법(핵에너지법, 핵비확산법, 무기수출통제법, 핵확산방지법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 대통령의 '양해 권한' 확대 필요)

2) 파키스탄의 핵개발 성공과 미국의 양면적 대응

■ 파키스탄의 핵개발 배경 및 경과

④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배경

- 1971년 인도와의 전쟁 패배가 핵무기 개발의 도화선, 군사력 강화 요구 증대(국민적 동의)

- 인도의 핵실험 단행('74년)에 자극을 받아 핵무장 필요성 고조
- 파키스탄의 국제적 지위 제고 및 경제적 문제(에너지) 해결

④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경과

- 65년, 美, 제공 연구용 원자로(5Mw 고농축우라늄 원자로) 가동
- 72년, 캐나다 공급 125Kw급 원자로 설치(연 55kg 플루토늄 생산)
- 73년, 대규모 핵 재처리시설 관련 佛과 협상 진행(국제적 반발로 계약취소)
- 75년 독일에서 압둘 카디르 칸 박사 귀국, 핵개발 가속화,
- 84년 농축우라늄 개발 성공 및 핵개발 지속 발표
- 86년, 핵무기 장치 생산 관련 기술·재료 확보
 - * 파키스탄은 주로 밀수와 암시장을 통하여 핵개발을 지속
- 98.5.28~31, 6차례 지하 핵실험 실시(6~13kt 규모)

■ 미국과의 관계 및 대응 평가

④ 파키스탄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면적 대응

- 1979.5 파키스탄에 대해 경제·군사적 원조를 단절하였으나, 1981년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1979.12)에 대응하여 6년 동안 농축우라늄 제재 적용을 해제하고 대규모 경제·군사적 원조 제공
- 또한 1985년 Pressler Amendments를 제정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감축을 규정하였으나, 1989년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와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1995년에는 Pressler의 조항을 무효화하는 Brown Amendments를 제정
 - * Pressler Amendments : 파키스탄이 핵폭발 장치 미보유 및 핵보유 위험성의 현저한 감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조 및 정부 군사판매 중단
- 1998년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은 Glenn amendment에 의거 경제·군사적 원조를 다시 중단하였으나, 9.11테러사건 이후 파키스탄을 아프카니스탄 전쟁수행을 위한 frontline state(영공개방,

기지제공 등 협력)로 인식하고 다시 각종 제재를 해제

- 미국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 첫째,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 고려
 - 둘째, 밀수 또는 암거래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 경시
 - 셋째, NPT 미가입국에 대한 국제적 통제 장치 미비
 - 넷째, 경제제재의 비효율성(소련, 중국, 이란 등과 접경)
 - 다섯째,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한 군사적 개입 실기

3) 이스라엘의 핵보유와 미국의 묵인

■ 핵무기 보유 배경

- 주변 아랍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수단
 - 1970년 기준, 아랍국가연합과 비교 시, 병력은 5:1, 전차는 2.8:1, 항공기는 2.8:1로 열세
- NATO나 일본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얻는데 실패
 - 미국은 이스라엘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될 경우, 주변 아랍국을 자극하여 반미-친소 아랍연합체제가 출현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
- 1998.10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이스라엘의 보호를 보장”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합의각서에도 기술협력과 외교적 지원만 언급되어 있을 뿐, 미국의 군사적인 지원이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를 추진한 1950~60년대는 핵확산 방지에 관한 통제체제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도 주요 요인

■ 핵무기 개발 추진 경과 및 평가

-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추진 경과
 - 1948 벤 구리온 수상, 핵무기 개발 필요성 천명
 - 1949 핵무기 연구소인 Weizmann Institute 설립
 - 1952 국방부 산하에 원자력위원회 설치
 - 1957 프랑스와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 1958 네게브 사막의 Dimona에 연구용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착공
 - 1962 30MW 용량의 Dimona 원자로 가동 개시
 - 1968 본격적인 플루토늄 생산 지시
 - 이후 매년 2~5개의 핵무기를 생산해온 것으로 추정
- 이스라엘 핵무기 능력 평가
 -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사실은 1986.10 런던 선데이 타임스지가 Dimona의 원자력기술자였던 Mordechi Vanunu가 공개한 자료들을 근거로 폭로하면서 알려짐.
 -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언급하거나 핵실험을 한 적은 없으나, 1970년대에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현재 100여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샤미르 총리는 1991년 걸프전 직전, “이라크가 화학무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가공할만한 최악의 보복을 하겠다”고 언급

3. 핵개발 차단 진행 사례 현황

1) 이란의 핵개발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 이란 핵 개발 및 핵문제 진행 경과

○ 이란의 초기 핵프로그램 개발

- 1959년 팔레비(Shah Pahlavi) 정권이 TNRC(Teheran Nuclear Research Center)를 설립하며 시작, 58년 IAEA 가입,
- 1960년대말에는 미국으로부터 5MWt급 연구용 열중성자로를 도입, 1968년 NPT 가입 서명
- 1974년에는 원자력청(AEOI: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을 설립하고, 전문가 150여명을 확보
- 1979년 이슬람혁명 발생으로 팔레비 국왕 실각 후 핵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중단
- 89년, 이란-러시아 「핵기술협력협정」 체결, '92년, 5MW원자로 및 27KW 소형 중성자로 가동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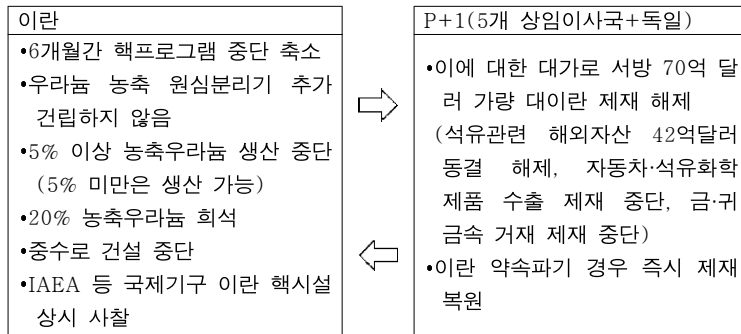
○ 이란 핵문제의 발생과 진행경과

- 2002년 이란의 반정부단체인 이란저항국민협의회(NCRI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이란 나탄즈(Natanz) 우라늄 농축 시설 및 아락(Arak) 중수생산시설 등 IAEA 미신고시설을 폭로
- 06.12.24, UN안보리 對이란 제재 결의안(1737호) 통과
- 07.3.24, UN안보리 2차 이란 제재결의안(1747호) 채택
- 08.3.3, UN안보리 3차 이란 제재결의안(1803호) 채택
- 10.4.9, 아마디네자드 이란대통령, 첨단원심분리기 개발 발표
- 10.6.9, UN안보리 4차 이란 제재결의안(1929호) 채택

<UN안보리의 1~4차 대이란 제재 결의안>

구분	1차 (1737호, 06.12.23)	2차 (1747호, 07.3.24)	3차 (1803호, 08.3.3)	4차 (1929호, 10.6.9)
제재대상	•개인:야흐하 라힘 사파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12명 •기관:이란원자력청 등 10개	•개인:모르테자 레자이에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 등 15명 •기관:Bank Sepah 등 13개	•개인:모하마드 레자 나크디 혁명수비대 준장 등 13명 •기관:카베흐 원심분리기 제작사 등 12개	•개인 : 1~3차 대상 40명 포함 총 41명 •기관 : 이란혁명수비대 및 이란국영 해운회사 소속 단체 등 1~3차 대상 35개 포함 총 40개 단체
주요내용	•이란의 핵 농축, 재처리 활동 및 중수로 관련 프로젝트 중단 •핵, 탄도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이전 금지 •제재 대상의 자산 동결	•이란으로부터 무기 및 관련물자의 조달 금지 •이란정부에 대한 무상원조, 재정지원 및 양허성 차관의 신규약정 중단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제재 대상의 여행제한 요구 및 제재위에 여행제한 관련 사항 신고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무인 자동 항공수단 관련 품목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 금지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증을 포함한 공적 재정 지원의 신정 약정시 핵활동에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자산동결 대상 추가 지정	•이란의 해외 우라늄 채광 및 핵-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기술 생산 사용과 관련된 이익 취득 금지 •대이란 이전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모든 화물에 대해 자국내 항공·공해 공해상 검색 촉구 •이란 핵확산 민감활동,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금융 제재 범위 확대강화
사후조치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불이행시 추가 제재 경고	•60일 이내 결의 이행 결과 보고 •제재위 활동 지원을 위한 1년 임기의 전문가 그룹(8인) 설치

- 10.7.1, 오바마 미 대통령, 포괄적 이란제재법 서명, 보름 뒤 금융 제재 대상 포함한 시행세칙 발표
- 11.6.12, 이란 20% 농축우라늄 50kg 이상 생산 발표
- 11.12.31, 오바마 미 대통령, 강력한 이란제재 방안 포함된 국방수권법 서명
- 12.1.4, 유럽연합, 이란 석유 금수계획 잠정 발표
- 13.11.24, 이란 핵협상 타결



■ 이란 핵문제의 평가와 전망

- 이란 핵문제에 대한 평가
 - 국제사회는 핵비확산 차원에서 이란의 핵개발이 주변 아랍국들의 핵무장을 부추겨 중동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평화 로드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을 우려
 - 또한 미국은 이란을 자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란이 이라크내 반정부 단체를 지원, 미군의 입지를 좁히고 아랍 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
 - 이란은 IAEA 사찰관들의 사찰을 수용하는 등 자국의 핵개발이 평화적 목적의 합법적인 핵개발임을 강조
- 이란 핵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
 - 이번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6개월 시한부라는 측면에서 불씨는 내재되어 있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움
 - 단순히 경제압박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로만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동 여러나라들 사이에 회색적인 반응이 존재함.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라고 비난

V.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존합의 및 이행 평가

- 새로운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북핵해법 및 논의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1.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 배경

- 1991년과 1992년 사이, 남북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율하기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타결을 모색
- 북한 핵 활동 의혹을 풀기 위한 북한 내 핵시설 사찰과 관련된 국제적 요구 증가
 -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내의 핵 철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중단, 비핵지대화 창설 등으로 대응
- 그러나 1991년 11월, 남한 내 전술핵의 철수가 공표되고 12월 18일 ‘핵부재선언’이 발표되면서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됨
 - 1991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한국과 미국은 남한 내에 배치된 전술핵의 철수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 진행
 - 1991년 8월 7~8일, 김종휘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은 하와이에 서 미국의 당시 국방차관 폴 월포위츠와 회동, 월포위츠는 김종휘에 남한 배치 전술핵 철수를 최종 통보
 - 부시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27일(한국 시각 9월 28일), 남한 내의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
 - 같은 해 12월 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직후인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핵부재 선언’

-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미·북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

2) 경과 및 내용

- 남북 간에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 이 1991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판문점에서 개최
- 북한은 그동안 주장해 오던 비핵지대화 주장을 접고, 우리 측의 비핵화 선언에 응하게 되었으며, 합의된 내용을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
 - 이후 내부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19일 회담합의서와 함께 발효
 - 선언문에는 양측은 남측이 주장했던 "국제원자력기구 핵관련 절차 이행명시" 조항과 "북측의 핵공격 가상 군사훈련금지" 조항을 모두 제외
- 비핵화 공동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
 - 모두 총 6개항으로 이루어진 이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사용 등에 대한 일체 금지(1항),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2항), 핵재처리에 관한 시설을 비롯 우라늄농축 시설 보유 금지(3항),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통한 상호 사찰(4항), 발효 후 1개월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5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8조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규정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결과

- 이렇게 채택된 비핵화 공동선언은 6차 남북고위급회담 에서 기본합의서와 함께 효력을 발생
 - 이에 앞서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우리와 미국의 요구대로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을 마치고, 북한 핵 시설에 대해 국제사찰을 수용하여 당시로서는 핵 문제에도 해결의 가닥
 - 또한 남북 간에는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가동 되어 사찰대상 선정, 사찰 절차와 방법을 담은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 개시
- 그러나 1년 후 북한은 한미 합동 팀스피리트 훈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 의미를 사실상 상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로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

-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위기가 발생

-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이를 파기함으로써 선언에 그치고 있지만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게 그 이행과 준수를 요구하는 명백한 준거가 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및 제재 결의 시에도 중요한 근거로 되고 있음

2. 제네바 합의

1) 진행경과

■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핵문제 단락, 핵동결 및 경수로 사업 진행

- '93.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93.5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이어, '93.6월 이후 1년 반에 걸쳐 진행된 미·북 회담 결과 '94.10.21 제네바합의 타결
 - 북한이 흑연 감속로 및 관련 핵시설(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고 해체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2003년까지 경수로 1,000MWe 2기 제공 주선, 미·북 관계정상화 등 약속
- 제네바 합의에 의거, 북한의 5개 핵시설 가동 중단 및 IAEA에 의한 감시 유지
 - 5MWe원자로(영변), 50MWe원자로(영변), 200MWe원자로(태천), 방사화학실험실(영변), 핵연료 제조공장(영변)
- '95.12-'97.6 경수로 공급협정 및 일부 후속의정서 체결, 97.8월 이후 경수로 발전소 건설 공사 진행
 - 2003.11월말 공사 중단당시 34%의 공정 진행, 총 공사비 46억불(한국 32.2억불, 일본 10억불, 미국 3.8억불) 중 29.9%인 13억 7천 9백만불 집행(한국 : 9억 9천 7백만불, 일본 : 3억6천5백만불, EU: 천7백만불)
- '98년 Time지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 제기, '99년 美 방문단 현장 방문('99.5.18~24), 핵개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

■ 경수로 사업 관련 미·북간 이견 조정

- '00.3월 클린턴 행정부, 우리측에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반대하자 더 이상 미거론
- '00.6.18, 북 외무성 담화, 경수로 지연으로 AF의 운명이 경각에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과 경수로 지연에 따르는 전력손실 보상 요구
- '01.6.6 부시 대통령,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3개 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미·북 대화 제의
 - － ① 제네바 합의 개선, ② 검증 가능한 미사일 개발 규제 및 미사일 수출 금지 ③ 덜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군비태세
- 대북 핵사찰 시기 관련 IAEA와 북한간 이견 조정
 - － 핵사찰에 최소 3-4년 소요되므로, 경수로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05.5) 핵사찰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02. 5월 사찰개시 필요
 - － 북한 : 핵사찰은 3개월이면 충분하므로, 조기 핵사찰 불필요

■ 2002년 10월 북핵문제 재발

- '02.10.3, 제임스 켈리 美특사 방북시 북한의 HEU 핵프로그램 시인
→ 10.17, 한·미는 同 사실을 공동발표(명백한 미·북 AF 위반행위)
- 이후 KEDO의 대북 중유 공급 중단조치 결정(11.14),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12.21), IAEA 사찰관 추방(12.31), NPT 탈퇴('03.1.10), 5MWe원자로 가동('03.2.26) 등으로 사태 악화

2) 평 가

- 제네바 합의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북한의 핵동결과 폐기를 북미, 남북관계의 정상화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였음.
 - －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 냈지만 미국과 북한의 절충적 타협의 산물로서 한계를 내포
 - －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 시기가 상당부분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가능성, 50MWe 및 200MWe에 대한 통제수단도 구비되지 않았음.

3. 9.19 공동성명

1)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05. 9. 19)

조 항	항 목	세 부 내 용
제1항	한반도 비핵화 이행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복귀 ·한국, 미국의 남한내 핵무기 부재 확인 ·미국, 핵/재래무기에 의한 북한 침략/공격 의사 불보유 확인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제2항	6개국간 행동규범	·UN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규범 준수
	동북아냉전구조 해체	·미·북 관계정상화 추진 ·북·일 관계정상화 추진
제3항	경제협력 및 대북에너지 보상	·한국, 200만kw 전력제공 제안 재확인 ·5자, 대북에너지 지원 용의 천명
제4항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의 제도화	·동북아에서 안보협력 증진 방안/수단 모색 ·별도 포럼에서 직접 당사자들간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개시

2) 평 가

- 제네바합의가 과거핵의 논지를 남겼다면, 9.19 공동성명은 과거핵, Pu, HEU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폐기(CVID)를 요구
- 9.19 공동성명은 '나쁜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원칙 적극 고수 혼적
 - －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반면, 9.19 공동성명에는 원칙제시 수준에서 그침
 - － 제네바합의에서 미국은 중유제공이라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 9.19

공동 선언에는 직접 부담 조항 未명시

- 제네바합의에 비해 9.19 공동성명은 북핵문제 뿐 아니라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 －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순서 등 구체적 이행방안 未결정

■ 긍정적 측면

- 북핵문제의 해결목표 및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초 마련
-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 주권존중, 평화공존, 미·북관계정상화 등을 약속함에 따라
 - －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외 신인도 증대 등으로 외국인의 對韓 투자 확대 기대 가능

■ 부정적 측면

- 북핵문제 해결목표와 원칙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순서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아직 미결상태인 바,
 - － 향후 6자회담에서 이행순서(sequencing) 문제를 놓고 미·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북한에 의한 사태악화 가능성 상존
 - － 한·미·일은 북한의 핵동결 및 폐기 진행정도에 따라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관련국이 상응조치를 먼저 제공할 경우 핵폐기에 돌입한다는 입장
- 북측 요구로 한국이 비핵화공동성명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우리 영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수·이행되

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바,

- 북측이 이를 빌미로 우리 영토내 미군기지 등에 대한 일방적 사찰을 요구해올 가능성 배제 곤란
- 이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의 비대칭적 적용 문제, 주한미군 사찰 허용문제 등을 놓고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이 우려됨

○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핵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함으로써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또한 미·북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것과 관련,
 - 북한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북핵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2.13 합의 주요 내용

○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

구 분		북측 조치	여타국 조치
초기 단계	30일 이내		<실무그룹(W/G) 가동 개시> ① 한반도 비핵화(중국) ② 미·북 관계정상화 ③ 일·북 관계정상화 ④ 경제·에너지 협력(한국) 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러시아)
	60일 이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 5MWe/50MWe/200MWe원자로 • 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IAEA 사찰관 복귀> • 감시 및 검증 활동 <핵포기 대상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list) 협의>	<긴급 에너지 대북지원> • 중유 5만톤 상당 <미·북 양자대화 개시> • 외교관계 수립 협의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개시 및 對적성국교역법 종료과정 진전 <일·북 양자대화 개시> • 평양선언에 따라 관계정상화
	다음 단계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 신고> • 사용후 연료봉 추출 Pu 포함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포함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중유 95만톤 상당

○ 초기조치 이행 이후 6자 장관급회담 개최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의 별도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

○ 2007년 3월 19일 제6차 6자회담 개최

※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Agreed Minutes on Burden Sharing)

- 美·韓·中·러는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대북지원 분담 합의
- 동일 원칙하에 일본의 참여 기대 및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

3) 10.3 합의 주요 내용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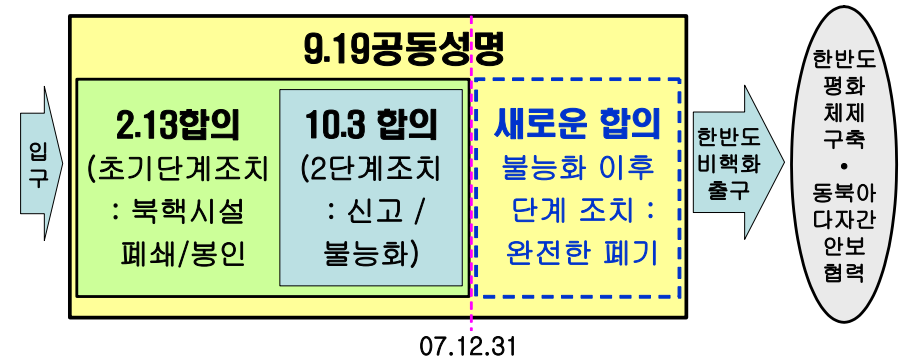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비 핵 화	불능화	•북측, 「9.19/2.13합의」에 따라 포기 예정인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 연내 영변 3개시설(5MWe원자로, 재처리, 연료제조공장) 불능화 완료, 구체 조치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라 수석대표들이 채택 •미국, 불능화 조치 주도 및 초기 비용 부담 - 2주內 전문가 그룹 방북
	신고	•북한 : 금년내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비확산	•북한 : 핵물질, 핵기술, Know-how의 비확산 공약 재확인
양 자 관 계	미·북	•미국 : 테러지정국 해제/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진전에 대한 공약을 상기하며 ‘미·북 관계정상화 W/G회의’에서의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조치와 병행하여 공약 이행
	일·북	•일·북은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양측간 집중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 모색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중유 100만톤(既제공 10만톤 포함) 상당 경제·에너지를 인도적 지원 - 세부사항은 ‘경제·에너지 W/G’에서 최종 결정
6자 외교 장관회담		•6자 외교장관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 의제 협의를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 사전 개최

■ 평 가

-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해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단계 조치’에 합의한 데 의의
 - 제네바합의의 ‘동결’ 및 「2.13합의 의 ‘폐쇄/봉인’을 넘어선 ‘불능화 조치 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진일보
 - 미·북/일·북 관계 진전 가시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한 대외여건 조성 가능

- 북측, 상당부분 입장 수정을 통해 합의문 채택에 협력한 바, 신고·불능화 연내 이행의지 확인으로 한반도비핵화 달성 가능성 점증
 -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경협과 평화체제에 주력하려는 의도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 합의문간 관계>



■ 북핵 협상의 교훈

1) 북한의 이해관계 파악 필요

- 북한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핵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안전을 위협한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임
 - 특히 김정은 세습정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핵무기가 강조되는 이상 핵은 체제의 존폐와 병립하여 존재하게 될 것임
 - 최근 북한 내 경제분야에서는 사회주의 내에서의 시장경제도입, 즉 경제관리 개선 및 민생우선 등을 강조함으로써 분위기가 호전되고 활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진-선봉특구 개발 등도 더디지만 나름 성과를 내는 가운데 대외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군부가 차지하였던 지위와 이권 등이 당과 내각으로 이전되고 있음

- 최근 북한 내부의 변화는 경제적 요인이 촉발한 바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능력을 강화시켜 최고의 억지력을 갖춘 후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국방비를 감축하고 유희 자본과 인력을 경제분야에 더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인식됨
 - 국방력을 경제분문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 시스템상 가능한 일이나 군수경제가 민간경제로 전환되는 사이의 안보공백을 핵개발로 메우겠다는 논리임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 해소 등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핵보유국으로서 대외관계 개선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논리도 국제사회에서 설명이 되지 않음

2) 중국과의 협력 필요

- 일부에서는 중국이 왜 북한을 강하게 제재, 압박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중국의 입장을 간과하는 일방적 주장일 뿐임

- 중국이 북한 핵개발로 인해 대북압박에 동참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임
- 중국의 북한 포기로 인해 북한이 붕괴될 경우 그 모든 후과는 중국이 짊어져야 하며 따라서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
-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 미국과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임
- 중국의 역할은 북한의 핵보유를 나무라는 역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중국과 협력을 해 나가야 함

3) 다양한 수단의 사용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 6자회담이 주춤하던 시기에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은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 결과 의회판도가 바뀔 경우 대북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을 한 바 있음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상유지에서부터 군사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6자회담을 통한 대화지속과 대북 압박의 병행이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라 결론지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견지되고 있는 방법론 역시 제재와 압박-대화와 협상의 투트랙(two-track) 방식임. 다만 미국과 한국 등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포기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대화와 협상재개를 위한 조건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제재를 위한 제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고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기하되 제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함
- 과거의 비판처럼 제재가 자칫 대화거부와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강경론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 우리는 대화와 압박을 균형있게 병행함으로써 김정은 앞에 놓여진 다른 선택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4) 일관성 유지

- 그간 북핵협상은 어떤 치밀한 전략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NPT 탈퇴, 재처리시설 재가동, 핵실험 등 핵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위기 국면이 발생한 이후에야 미국은 사후적이며 대응적인 반응 조치로서 북핵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1994년 5월 북한이 임의로 핵연료봉을 추출하여 전쟁위기가 발생한 이후에야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었으며 2006년 10월 제1차 북핵실험도 2.13 합의를 촉진시킴
- 이렇게 위기국면에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펼쳐왔고 급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 무엇보다 북한은 20년동안 일관되게 북핵입장을 견지해 왔는 반면 미국과 한국 등은 정권과 정책이 계속 변동되어 왔음
- 우리 사회내의 이념갈등, 정당간 갈등, 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등은 20여년간의 북핵정책에 투영되어 왔는 바 북핵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

5) 협상당사자간의 신뢰

-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도 늘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붕괴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왔고, 북한은 이들과 늘 자신들에 대한 압박과 정권교체를 피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음

- 북한은 이를 핵합의 이행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이용한 바, 합의와 파기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신뢰의 부재는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음

VI. 가칭 “한반도 그랜드 플랜” 구상

1. 목 표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통해 끝장을 보려하고 미국도 더 이상 과거의 반복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함
 -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6자회담도 거부하고 있음
 - 북한은 결국 어차피 핵을 협상용으로 활용하여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시키려 할 것임
- 결론적으로 6자회담 등 기존 논의, 북한의 핵보유 포기 가능성, 미국식 협상체계의 한계, 평화체제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인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함.
 -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에서 논의된 내용, 그랜드바겐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서 ‘그랜드 플랜’을 수립·관련국과 협의 개시

■ 그랜드 플랜의 주요 내용

- 비핵화가 미북간 신뢰의 문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간 신뢰 문제, 동북아 평화 협력이 국제사회간 신뢰 조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신뢰’를 매개로 ‘비핵화-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을 한 채널로 융합
 - △기존 비핵화 채널의 모든 협의 요소와 쟁점 등을 도출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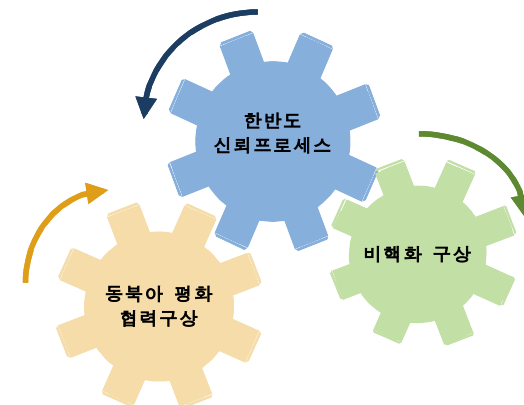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요소, △동북아 평화협력으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모두 배열하여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들을 구성

-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는 비핵-평화지대 설정,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목표로 전개
 - * 통일문제는 남북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화체제의 최종목표를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로 설정

< 그랜드플랜의 주요 골격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남북간 신뢰)	비핵화 구상 (북미간 신뢰)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국제사회간 신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일괄타결과 및 단계적 이행 북미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체 다국간 협력안보체
○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 회담 추진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 정치군사 신뢰구축 ○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 ‘비전 코리아’ 추진	○ 한미/한중/한미중 대화 ○ 6자회담 재개 ○ 6자 정상선언 추진 ○ 평화체제 협상 개시 ○ 국제공조체제 유지	○ 역내 연성이슈 협력 ○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 유라시아 경제협력 ○ 서울 프로세스 추진

< 그랜드플랜의 3대구상 연계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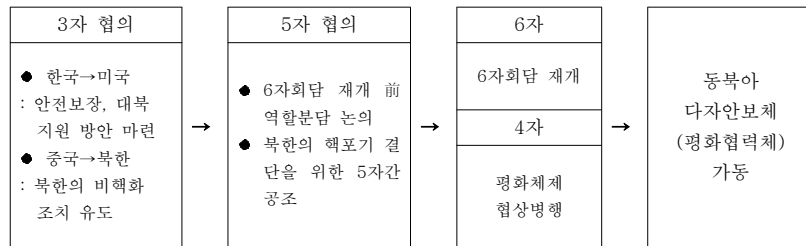
2. 구 도

- 한국정부로는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이해국가들간의 국제공조를 선순환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지혜가 요구됨
 -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 올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북우회 압박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음
 - 국제화가 심화된다고 조급함 때문에 북핵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인식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미동맹의 괴리를 가져왔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이나 선택-후남북관계 추진논리는 북한의 통미봉남을 가져왔음
-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 동북아평화를 위해 논의의 테이블에는 현실적으로 국가별 핵심, 중심, 지원 역할 구분이 필요한 상황
 -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는 미북, 한중, 일러의 역할 구분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는 남북, 미중, 일러의 역할 구분
 - 동북아 안보협력에는 G2인 미중을 핵심으로 남북일러 4국이 중추와 지원역할 수행

3대구상 연계 전략		핵심	중심	지원
비핵화	+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평화체제	+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동북아 안보협력	+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 미국은 북한의 핵이 우선 포기되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어느 일방의 입장이 굽혀지기 어려운 형국임
 - 그러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보유국, 개발국이 된 마당에 북핵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이슈가 되었음
 - 결국 비핵화, 비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이슈를 하나의 바스켓에 넣고 국제레짐의 카테고리 내에서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음
 -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핵선군정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비핵평화체제',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연결시키는 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함
- 과거 4자회담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클린턴 행정부내에서는 페리프로세스가 가동된 바 있음
 - 미국 부시 행정부 내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추진 문제까지 접근한 적이 있는 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
 - 이를 위해 우선 한미간, 그리고 한-미-중간 3자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간 합의일치를 보아야 함
 - 로드맵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포기와 안전보장을 바꾸는 포괄적이며 동시적 교환방식이어야 함
 - 이러한 5자의 합의를 북한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과 평화체제 문의를 논의하는 4자회담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임
 - 9.19 공동성명은 선택포기-후평화체제 논리에 따라 별도의 포럼 구성을 상정하고 있으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4자회담은 우리의 논리대로 남북이 중심, 미중이 보장하는 2+2 형식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 가능한 협의 구도 >



- 비핵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자간의 일치된 단합과 북한 설득 노력임
 -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반대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를 가동해야 할 것이며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핵관련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북핵문제는 그간 북핵협상과정에서 불거진 미사일 문제, 재래식 무기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 등 관련 쟁점 등을 총망라하고 포괄적으로 분류, 재구성하면서 관련국간 지속적이고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큰 그림을 갖고 북핵문제를 바라보아야 함
 -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의 부재라기보다 북한 자체가 가진 딜레마이자 한계라 할 수 있음
 -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체제 생존에 있다고 할 때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핵개발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위한 분야로의 투입이 늘어나게 될 것임

- 따라서 북핵 전략은 단순히 북핵문제 자체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정세, 통일 문제까지도 고려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주변환경은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아시아로의 복귀와 중국의 신형대국 형성, 동북아 국가들 간의 영토, 역사, 이념, 해계모니 등은 한반도 주변 외교를 펼치는데 협력적 동력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갈등요소 또한 만만치 않음
 - 우리로서는 우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한미동맹은 비핵화, 억제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통일한국 의 미래비전 하에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함
 - 한중관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한국 의 미래상에 대해 중국과 교감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쌍무적 관계를 동북아 다자협력체와 조화시키는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함

- 한반도의 평화를 동북아의 평화로 나아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나가야 함
 -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6자회담,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상을 상정하고 있음
 - 다만 동북아 역내 정세를 감안, 동북아시아에서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이른바‘서울프로세스’라고 일컫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비군사적 요소에서 출발하므로 군사 중심적 성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틀을 만들 맥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이행방식과 기구

○ 포괄적 접근에 따라 북한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 평화협력의 협의 요소 들을 일괄 타결

i) 북한 비핵화와 안전보장 문제의 동시적 교환

- 북한 비핵화 결단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
- 북한의 핵동결-폐기(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미국의 안전 보장 조치간 '동시행동' 로드맵 마련

ii)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

-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에 맞춰 대북 경제지원 추진
- 남북경제협력, 유라시아 3각 협력 등 북방경제플랜 가동
- 안보리 제재 조치 해제, 다국적 대북투자 및 경제지원플랜 가동 등

* 가역 조치와 불가역 조치와의 관계성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미 이행 강제수단 확보(안보리 제재조치의 단계적 이행)

iii) 비핵화-평화체제-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적 접근

- 비핵화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트랙이 동시병행적으로 이행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 수반
- 9.19 공동성명 working group 사례를 참고하여 세가지 트랙을 추동하는 별도의 이행기구 마련

○ 일괄타결을 위한 주요 쟁점

- 비핵화 트랙(기존 핵무기, 핵물질, 우라늄 농축 및 경수로 제공 문제, 신고 및 검증, 사찰 방식,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등)
- 남북관계 및 평화체제 트랙(주한미군 철수, 군축 등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 가동 문제, 평화협정 체결 시기 및 내용 등)

- 동북아평화협력 트랙(동북아 경제협력 사업, 다자안보대화, 서울프로세스 추진 방안 등)

○ 단계적 이행 조치

- 6자간 대타협(그랜드 플랜 실행 합의) 이후 북한 비핵화 조치를 3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동시이행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3단계 이행방안 >

1단계	- 북한의 NPT 복귀, 비핵화공동선언 · 9.19공동성명 준수 표명, 핵 시설 가동 및 핵개발 중단,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 -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불가침 및 종전선언
↓	
2단계	- 북한 핵프로그램(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신고 및 검증가능한 폐기 - 경제지원 패키지 가동(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 - 대북제재 완화 · 중단 -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협상 개시 - 평화체제 협상 개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 동북아 경제협력사업 추진, 다자안보 대화 개시
↓	
3단계	- 북핵폐기 달성 - 평화협정 체결 - 남북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성(서울 프로세스 추진)

1) 남북관계 관련 협의 방향

■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

○ 비핵화-안전보장 대타협이후 대부분의 남북관계 조치들이 비핵화 트랙에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임.

- 우선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전개

*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경제협력은 MB 정부때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활용할 필요

- 5.24 조치가 북한 핵개발에 대한 penalty 성격이 많은 만큼 대규모 경제협력 및 교역을 위해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협의가 개시되어야 함.
- 남북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도로, 에너지·자원, 농업협력 등을 추진

■ 남북정상회담 추진, 남북대화체 복원

○ 비핵화에 대한 6자간 대타협 이전과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최소한 두차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랜드 플랜 제시 및 비핵화 대타협을 위한 남북차원의 독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중간 협의에 병행하여 남북정상회담 타진
- 비핵화 대타협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남북간 협의채널 복원

○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원용,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재래식 군비통제, 군축 문제를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 비핵화-상응조치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구성

○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검증 및 반대급부 이행을 계획-이행-감독할 추진기구 구성

- 특히 북한 핵폐기 과정의 검증, 경제적 반대급부 이행, 남북관계-북미-북일관계 등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로드맵 이행,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 등을 포괄하는 기구 필요
- 가칭‘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로서 국제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분과기구(위원회, 사무국 등)를 두어 남북을 포함, 6자회담 모든 참가국이 참여

- 6자회담은 6자간 조치들을 결정하고 최종 추진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는 이를 집행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임.

<한반도 평화·협력 기구(가칭) 역할>

- 그랜드 플랜 및 6자 정상선언 이행
- 기타 6자회담 결정사항 입안 및 이행
- 분과 기구(위원회)
 - 비핵화 분과 : 북한 핵관련 조치 및 상응조치 감독
 - 평화체제 이행 분과 :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 북한 재건프로그램 이행
 - 동북아 평화협력기구 : 서울 프로세스 입안 및 이행

4. 참여국과 협의방향

- o 과거 비핵화 협상방안들이 동맹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 사이에서 공감대와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
 - 포괄적인 해법은 좋으나 그랜드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간 비핵화 및 한반도 장래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마련한 이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추진전략(comprehensive strategy)을 중국 등 핵심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필요

- o 따라서 그랜드플랜이 실제 협상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관국간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
 - 그랜드 플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조와 중국의 협조, 북한의 전향적인 수용, 여타국의 지지 등 확실히 담보되어야 함.

i) 한미간 협의

- 한미간 비핵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유도 방안, 평화체제 구축,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확인
-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따른 대중관계의 비전, 핵없는 사회 건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과 대북 체제안전보장에 따른 북한의 장래와 연관지어 미국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 이러한 프로세스는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결정될 사안인바, 오바마 행정부내 선택포기론, 전략적 인내론, 대북 불신과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ii) 한중간 협의

-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신뢰구축 및 관계정상화가 긴요하

다는 입장인 바 비핵화-안전보장 교환방식에 대해 적극적인 가능성

- 다만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수용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 한편, 중국은 동 교환을 위한 세부이슈 확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소극적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바, 한-미-중 3자간 협의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iii) 5자협의 진행

- 북한 비핵화의 핵심 당사국인 한미·한중간 그랜드 플랜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 러시아 등 5자 당사국간 의견일치 확보
- 그랜드 플랜의 수용성과 실천성을 강화하기 위해 5자협의 활성화 필요(참여국간 철저히 조율된 조치만이 지난 북핵협상의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임)

iv) 대북협의 진행 및 6자회담 개최

- 그랜드 플랜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대북협의 진행 필요
- 남북접촉, 북미접촉, 남북미중 4자 접촉 등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 및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약을 통해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초보적인 신뢰를 구축
-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불신 및 핵포기 의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바, 남북한간, 북중간 대화설득 노력이 긴요
 - *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 정상차원의 외교노력이 전개될 필요
- 이러한 프로세스는 6자회담 개최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6자간 9.19 공동성명을 갱신하고 새로운 비핵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는‘한반도 비핵화에 대

한 6자회담 참여국간 이행조치에 대한 대합의(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

- 이를 토대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협상 개시를 알리는 ‘6개국 정상선언’ 추진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대타협 : 6개국 정상선언(안)에 담길 내용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천명, 미국의 항구적 대북 안전보장 천명
- 비핵화 및 관계 정상화, 대북경제협력·지원에 대한 동시이행 원칙
-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경제공동체(경제연합) 구성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 비전
- 6자회담 정상선언을 이행할 기구 구성 등

■ 결 어

- 중국이 유래없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간에는 북한 비핵화 도출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 부재한 상황
 - 한미는 진정성 확인전까지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나 어떻게든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그랜드 플랜’을 창안하고 미중간 협의, 6자 당사자들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북핵정책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시급히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의 initiative를 주기 위해서는‘그랜드 플랜’밖에 없다고 생각함
 -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인 바,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미국 설득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임.
 - 또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이

주도하는 비핵화 프로그램에 쉽게 동조할지 문제

-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엄청난 파장과 남남갈등을 유발

- 북한이 당분간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
 -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며 대화와 협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핵불용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태세 확보가 최우선적 요소
 -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확장억제수단의 운용이 북한의 핵위협별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운용을 거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전력 수단들도 구비되어야 함
 -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해설자료에도 튼튼한 안보를 통한 정책 추진이 최우선 순위로 되어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강력한 억지력의 확보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이 자세변화를 보일 경우 이를 완화하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함
 - 과거 남북교류와 협력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이 북한 정권의 핵개발에 뒷돈을 대왔다는 식의 태도는 곤란
 - 남북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의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차원적인 북핵협약이 가능하면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가 있으며 남북관계도 확대되고

통일논의도 확산될 것임

- 물론 정전체제를 한순간 평화체제로 전이시킬 수는 없으며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존재함
- 한미동맹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미북, 미중, 북중간의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어 있어 일회일비할 수 없음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거대 변화는 늘 남남갈등을 심각히 유발해 왔다는 점이며 그 남남갈등은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어렵게 하면서 내적 통합을 저해하였음

○ 그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도 대북정책이 정권의 교체 등 정치이념에 편승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임

-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의 공과를 모두 계승하겠다고 천명하였음
-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만이 국민들의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북한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 정부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들의 통합을 도모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조성되는 각종 난관을 헤쳐나갈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1. 국내자료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탈냉전·민주화시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평화연구의 시각,” 『역사비평』 통권81호(2007).

국회사무처, 「제313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2013. 2. 12).

김갑식·엄상윤·최수영·황지환,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연구총서 12-10 (서울: 통일연구원, 2012).

김경수, “2007 남북정상선언: 정치·군사분야 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2007).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파주: 한울, 2011).

——, “동력 부재의 6자회담과 북핵 협상을 위한 현실적 제언,” 『한반도 포커스』, 제26호(2013년 11·12월호)

김동엽, “평화체제와 비핵화: 북한의 북핵게임 체인지 My Way,” 「정정체제를 넘어 평화와 신뢰의 한반도 구상」, 2013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세미나(2013. 6. 28).

김상기,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 『한반도 포커스』, 제26호 (2013년 11·12월호).

김재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평화학연구」, 제14권 3호(2013).

김창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 과제,” KNSI 특별기획 제42-8호 (2013. 5).

류길재, “북핵문제의 성격과 해결을 위한 전략 구상,”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4호(2009).

문순보,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세종정책연구 2013-7(2013).

박건영·정옥식, 「북핵, 그리고 그 이후」(서울: 풀빛, 2007).

박근혜, “아시아의 패러독스 극복과 동북아의 새로운 지평,”한중일3국협력사무국 1주년 기념국제포럼(2012.10.15.).

박기덕·이상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서울: 세종연구소, 2008).

박인휘, “G2시대 세계질서 전망과 한국의 외교정책,” 「정책연구」, 통권 169호(2011년 여름).

_____,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신뢰외교의 확산,” 「한반도 포커스」(2012년 11/12월호).

_____,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교훈,”2012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12.12.7.).

_____, “갈등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의미와 도전,”평화재단 제59차 전문가포럼(2013).

_____, “북핵문제, 박근혜 정부의 시각과 전략,” 『한반도 포커스』, 제26호 (2013년 11·12월호)

성재기,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평가: 의도와 지속가능성,” 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세분석(2013. 6).

양무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평화재단 제62차 전문가포럼 (2013년 9월 10일)

이상숙,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국립외교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5)

이석, “2013년 상반기 북한경제 : 북한 군사도발의 경제적 귀결,”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7월호. pp. 7-14.

이수훈 편,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2).

임수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1989~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7).

정창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성공할까?” 「민족21」, 통권142호 (2013년 1월).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5-02(서울: 통일연구원, 2005).

조성렬, 『뉴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년 6월)

조순구, “핵무기 해체사례와 북한 핵의 평화적 관리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5권 3호(2005).

조한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평화재단 제62차 전문가포럼 (2013년 9월 10일), pp. 10-12

최용환, “위기의 한반도, 북핵폐기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간담회 자료(2012. 6. 1).

최진옥 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_____,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통일부,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3).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자료집(2013.8).

하영선,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한반도평화포럼, 『2013년 새정부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비전과 과제』 (서울: 한반도평화포럼, 2012).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한용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권 1호(2013).

함형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실재와 동맹협력방안,” 「한미동맹 60년의 주요 현안과 발전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안보국방학술회의(2013. 10. 18).

홍현익,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한울, 2012년 6월)

_____,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전망 및 해결방안 - 2008년 이후,” 평화재단 제49차 전문가 포럼(평화재단, 2011년 9월 6일).

_____, “미·중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 재개 전망과 대응,”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1년 3월 1일).

_____,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

24권 제1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8년 봄).

황지환, “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북핵포기의 가능성과 한계,” 「전환기 한반도 정치경제의 동학: 구상·정책·실천」, 2012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2012. 12. 7).

황진환, 『협력안보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남북한, 동북아, 국제군비통제를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붕명, 1998).

2. 국외 자료

Abramowitz, Morton, “North Korea Latitude,” *The National Interest* (Feb. 26, 2009).
Axelor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1984).
Barash, David P. *Approached to Peace: A Reader in Peace Stud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Booth, Ken and Nicholas J. Wheeler, *The Security Dilemma: Fear, Cooperation and Trust in World Politics* (London: Palgrave, 2008).

Chanlett-Avery, Emma and Ian E. Rinehart,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Sep. 13, 2013).

Dittmer, Lowell,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Fry, John, *The Helsinki Process: Negotiating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993).

Harrison, Selig S.,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 17, 2009).

Hollis, Martin, *Trust Within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Lachowski, Zdzislaw et al.. *Tools for Building Confid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lna, Sweden: SIPRI, 2007).

Macintosh, James. *Confidence Building in The Arms Control Process: A Transformation View*. (Ottawa, Canada: Canad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1996).

Nanto, Dick K. & Mark E. Manyin, “China–North Korea Relations,” CRS Report (Dec. 28, 2010).

Nikitin, Mary Beth 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echnical Issues,” CRS Report (April 3, 2013)

Oberdorfer, Don, *The Two Korea: A Contemporary History*.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97.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90–5 (Sep./Oct. 2011).

Pollack, Joshua, “New Insight into North Korea’s Gas Centrifuge Enrichment Program,” Asian Institute, Seoul (Sep. 25, 2013).

Poneman, Daniel B., Joel Wit and Robert L.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Reemtsma, Jan Philipp. *Trust and Viol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Rozman, Gilbert. *Strategic Thinking about the Korean Nuclear Crisis: Four Parties Caugh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Sanger, David, “U.S. Said to Weigh a New Approach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y 18, 2006.

Snyder, Scott A. & Bernard Gwertzman, “Dealing with North Korea Difficult Amid possible Succession,” CFR Interview (April 28, 2009).

Wolf, Jr. Charles. and Norman D. Levin. *Modernizing the North Korean System: Objectives. Method, and Application*. (Santa Monica, CA: RAND, 2008).